

附錄

目 次

【 第2次 本會議 】

1. 1993年度行政事務監事計劃承認의件 ————— 1029
2. 政府의秋穀收買決定再考促求에關한決議案 — 1039

【 第5次 本會議 】

3. 1992年度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 1043
4. 1992年度平昌郡一般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 1068
5. 平昌郡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廢止條例案
————— 1074
6. 平昌郡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1077
7. 平昌郡새마을所得金庫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
————— 1081

8. 1993年度平昌郡公有財産管理計劃第2次變更同意案
—— 1094

9. 1994年度平昌郡公有財產管理計劃同意案 —— 1102

【 第6次 本會議 】

10. 1993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 —— 1115

11. 平昌郡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1133

12. 1994年度平昌郡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 1138

13. 1993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 1141

14.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
案 —— 1154

【 第7次 本會議 】

15. 平昌郡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1174

16. 平昌郡保健支所運營支援協議會條例廢止條例案
—— 1178

【 建議結果 回信 】

17. 農業災害復舊實現實化에關한建議 ————— 1181

18. 政府의 秋穀收買決定再考促求에關한建議 —— 1189

1993. 11. 26
제 20 회 정기회

1993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

平昌郡議會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편성
5. 감사대상사무
6. 감사일정 및 장소
7. 감사자료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8. 감사요령
9. 행정사항

첨부 : 서류(자료) 제출목록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 첫째, 그 결과를 '94 본예산심의시 적극 반영하고,
- 둘째,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군민 본위의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코자 함.

2. 감사기간 : '93. 12. 1 ~ 12. 3 (3일간)

3. 감사대상기관

가. 당연대상기관 : 평창군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4. 감사반편성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가. 감사반

- | | |
|----------------------|----------|
| ● 위원장 이상훈 | ● 간사 박용태 |
| ● 위원 이치옥 주태원 김낙운 곽문춘 | |
| 김종영 | |

나. 사무보조 : 전문위원 신교선 외4명

(의사개장, 직원, 기록원 2)

5.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사무 (고유사무 + 단체위임사무)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정별	대상기관	장소	비고
'93. 12. 1 (수) 10:00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군청 대회의실	
'93. 12. 2 (목) 10:00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	
'93. 12. 3 (금) 10:00	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읍면(평창읍, 대화면 방림면)	"	

7. 감사자료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

가. 보고요구 : "별도" 보고요구서에 의함

나. 서류(자료)제출요구 : "별도" 서류제출요구서에 의함

다. 관계인 출석 요구 : "별도" 관계인 출석요구서에 의함.

8.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
- 보고청취, 서류검토, 질의답변

나. 감사진행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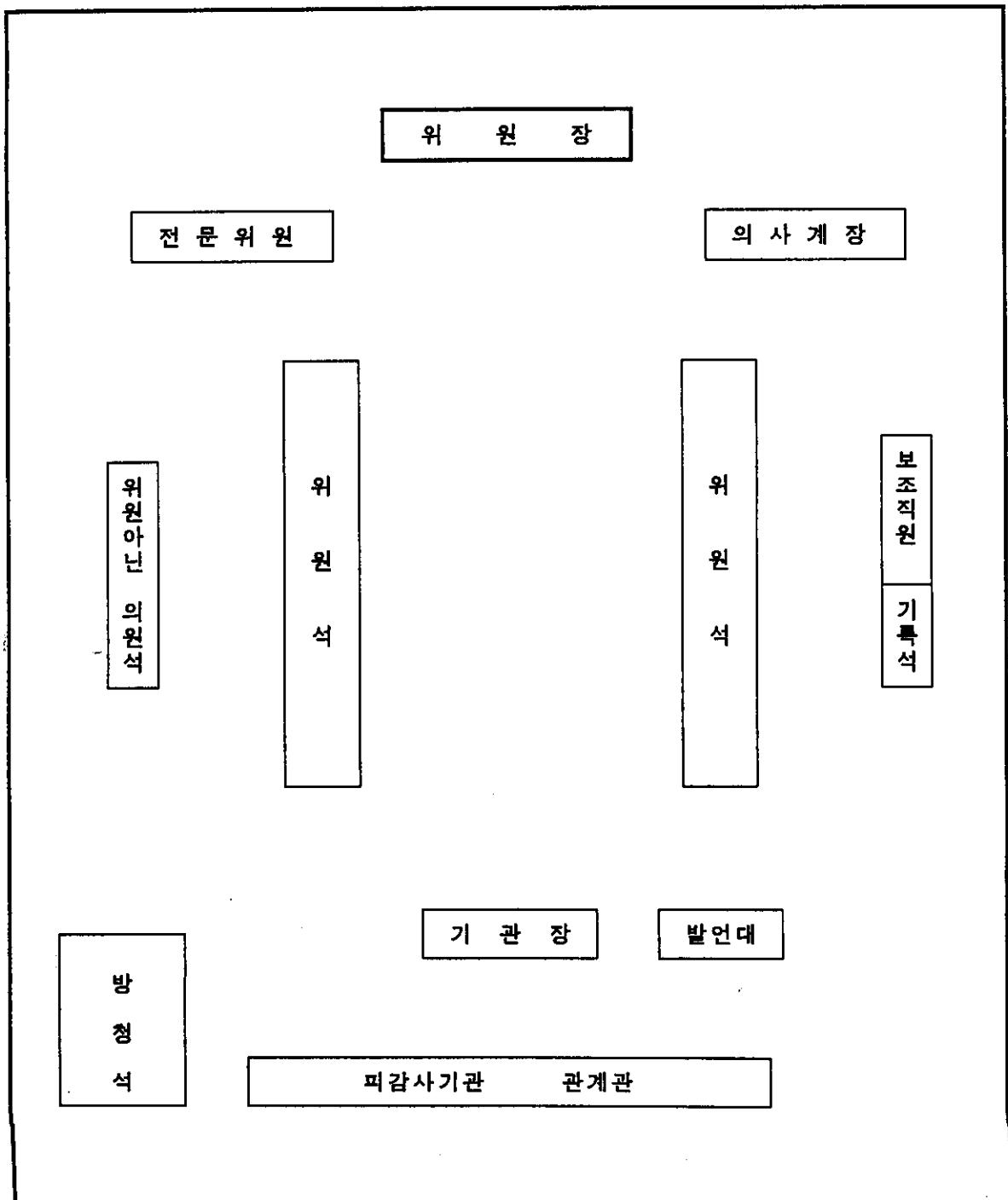
- 1일차 - 감사실시선언
 - 위원장 인사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감사대상사무보고
 - 질의·답변
- 2일차 - 감사대상사무 보고
 - 질의·답변
- 3일차 - 감사대상사무 보고
 - 질의·답변
 - 감사종료 및 강평

다. 감사보고서의 작성

- 작성일 : 감사종료 즉시
- 작성방법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간사와 협의 전문위원실에서 작성

9. 행정사항

가. 감사장 준비



나. 현지출장계획 : 사안발생시 적의조정

다. 기타협조사항 : 감사장시설 및 방송장비 이용등

서 류 제 출 요 구 서

평 창 군 수 귀하

평창군의회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17조의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출 서 투

- 가. 소관별 감사대상 사무처리상황 (지방자치법제9조 관련)
- 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별첨)

2. 제 출 일 시 : 1993년 11월 30일 13:00한

3. 제 출 장 소 : 평창군의회 사무과

4. 기타필요한 사항

가. 제 출 부 수 : 14부

나. 서류작성 편찰

○ 작성 : A4용지 워드프로세서(서류사본제외)

○ 편찰 : 목차 (페이지 및 색인표시)에 의하여 실과소단위 분철

다. 현지확인자료 : 피감사기관 준비

1 9 9 3 년 11 월 26 일

평 창 군 의 회 의 장

보 고 요 구 서

평 창 군 수 귀 하

평창군의회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 고 사 항 : 소관별 감사대상사무처리상황(지방자치법 제9조관련)
 2. 보 고 일 시 : 1993년 12월 1일 ~ 3일
 3. 보 고 장 소 :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장
 4. 기타필요한 사항
- 가. 보고자료 사전제출 : '93.11.30(화) 13:00한

1 9 9 3 년 11 월 26 일

평 창 군 의 회 의 장

관계인 출석 요구서

평창군수귀하

평창군의회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관계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1993년 12월 1일 ~ 1993년 12월 3일
 2. 출석장소 :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장
 3. 신문요지 : 소관별 감사대상 사무질의·답변
 4. 기타필요한 사항
- 가. 출석대상공무원 : 별첨

1993년 11월 26일

평창군의회의장

□ 출석 대상 공무원

출석 일 시	출석 대상 공무원	이 유
12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장 출석 의견진술 등
12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군수,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
12월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촌지도소장 산림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사업과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평창읍장 방립면장, 대화면장 	"

정부의 추곡수매 결정재고 촉구에 관한 결의안

의안 번호	142
----------	-----

발의년월일 : 93. 11.

발의자 : 이상훈 의원

의원 6인

1. 주 문

정부가 지난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도 추곡수매를 수매가 3%인상과 수매량을 900만석으로 결정함에 따라, 극심한 냉해피해로 인한 어려움과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금년도 냉해로 인하여 전체 논면적의 85%가 수확이 전혀없는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내 2,410농가가 73억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봄으로써 내년도 농사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농가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공업화위주의 불균형 성장정책의 그늘에서도 경제발전과 식량생산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으나,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지고, 생활환경을 포함한 복지면에서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이때에, 정부의 추곡수매가 3% 인상안은, 최근 10년동안의 인상을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써, 금년도 물가상승율이나 기업체 임금 인상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우리군의 년간 인구감소율 0.9%는 전국의 년간 이농인구 40만명이라는 부작용을 더욱 가속화 시킬것으로 전망 됩니다.

정부는 농업구조의 조정 및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신농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주요농산물이 적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함으로서 영농의식이 고취되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투자할수 있을때만 가능하며 이는 식량작물의 주가 되는 밭에 대한 적정수준의 가격지지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 정부안대로 실시 된다면 농민들의 이농이 가속화되고 농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지역경제는 물론 나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도 저해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평창군의회는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정부가 물가안정과 재정사정만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의 재고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여 줄것을 바라는 6만평창군민의 뜻을 모아 평창군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 제안이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금년도 추곡수매가 3%인상과, 수매량을 900만석으로 결정함에 따라 극심한 냉해피해로 인한 농촌의 어려움과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금년도 물가상승률이나 기업체 임금인상률에 비하면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농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므로, 따라서 정부가 물가안정과 재정사정만 내세운 수매안의 재고와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바라는 6만 평창군민의 뜻을 모아 관계기관에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코자하는 것임.

政府의 秋穀收買決定再考促求에 關한 建 議 文

政府가 지난 18日 國務會議 議決을 거쳐 今年度 秋穀收買量 收買價 3%引上과 收買量을 900萬石으로 決定함에 따라, 极심한 冷害被害로 인한 어려움과 U.R協商을 앞두고不安해 하고 있는 農民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平昌郡은 今年度 冷害로 인하여 全體 는 面積의 85%가 收穫이 전혀없는것으로 調査 되었으며, 管內 2,410 農家가 73억원 이라는 막대한 損失을 봄으로써 來年度의 農事 여부조차 決定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農家의 現實입니다.

그동안 우리 農民들은 工業化爲主의 不均衡 成長政策의 그늘에서도 經濟發展과 食糧生產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으나, 都農間의 所得 격차는 더욱 커지고, 生活環境을 包含한 福祉面에서의 격차는 더욱 擴大되고 있는 이때에,

政府의 秋穀收買價 3% 引上案은, 最近 10年동안의 引上率중 가장 낮은 水準으로써, 今年度 物價上昇率이나 企業體 賃金 引上率에도 못 미치는 水準이며, 우리郡의 年間 人口減少率 0.9%와 全國의 年間 移農人口 40만명이라는 不作用을 더욱 加速화 시킬것으로 展望 됩니다.

政府는 農業構造의 調整 및 農業의 競爭力を 높이기 위한 新農政政策을 推進하고 있으나, 이러한 政策은 主要農產物이 適正水準의 價格을 維持함으로서 營農意識이 鼓吹되어,

農民들이 안심하고 農業에 投資할 수 있을 때만 可能하며 이는 食糧作物의 主가 되는 稻에 대한 適正水準의 價格維持로 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今年度 秋穀收買가 政府案대로 實施된다면 農民들의 移農이 가속화되고 農村의 空同化現象은 더욱 深化되어 地域經濟는 물론 나라經濟의 安定的인 發展도 沮害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平昌郡議會는 今年度 秋穀收買에 대한 決定이 農民의 期待를 充足시키기에는 턱없이 낮은 水準임을 다시 한번 強調하면서, 政府가 物價安定과 財政事情만 내세워 決定한 收買案의 再考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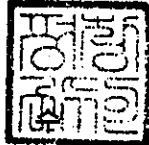
실의에 빠져 있는 農民들로 하여금 새로운 希望을 가지고 營農에 從事할 수 있도록 適正水準의 收買價와 收買量을 決定하여 줄것을 바라는 6萬 平昌郡民의 뜻을 모아 平昌郡議會 全體 議員의 이름으로 강력히 建議하는 바입니다.

’92年度平昌郡歲入歲出決算承認案

議案番號	145
------	-----

제출년월일 : 1993. 11.

제안자 : 평창군



7.1. 2003

1. 提案경위

1992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첨과 같이 승인요청을 합니다.

2. 關係法令

-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3. 192歲入·歲出決算概要

○ 總括

(단위 : 千원)

會計別	歳算額 (가)	歳入決算額 (나)	歳出決算額		歳計剩餘金 (라)	나/라 (%)
			가/나 (%)	다/라 (%)		
計	44,433,548	51,780,219	117	44,702,746	101	7,077,473
一般會計	35,345,943	42,138,869	119	37,266,062	105	4,872,807
特別會計	9,087,599	9,641,350	116	7,436,684	82	2,204,666

○ 成入決算

(단위 : 千원)

会計別	算額 (가)	徵收決定額 (나)	收納額 (다)	未收納額 (라)
		가/나 (%)	나/다 (%)	나/라 (%)
計	44,433,548	52,688,169	119	51,780,219
一般會計	35,345,949	42,376,049	120	42,138,869
特別會計	9,087,599	10,312,120	113	9,641,350

○ 成出決算

(단위 : 千원)

会計別	算額 (가)	支出額 (나)	移越額 (다)	不用額 (라)	算額 (마)
		마/나 (%)	마/다 (%)	마/라 (%)	
計	44,433,548	44,702,746	83	4,961,577	7
一般會計	35,345,949	37,266,062	86	3,337,891	6
特別會計	9,087,599	7,436,684	73	1,623,686	11

○ 成計上剩餘金處理狀況

(단위 : 千원)

会計別	計	明示 移越	事故 移越	繼續費	補助金 殘額	總成計 剩餘金
計	7,077,473	206,900	4,754,677		74,508	2,041,388
一般會計	4,872,807	206,900	3,130,991		70,823	1,464,093
特別會計	2,204,666		1,623,686		3,685	577,295

4. 其他事項

○ 별첨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참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평 창 군

1. 19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 결산총액은

○ 세입예산액 44,433,548,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780,219,344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53,565,644,06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702,746,710 원이며

○ 그 차인금액은 7,077,472,634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7,077,472,634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206,900,000원

• 사고이월 4,754,677,140원

• 계속비이월 원

• 보조금 집행잔액 74,507,84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41,387,646원이다.

2. 1992년도 일반회계는

○ 세입예산액 35,345,949,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138,869,366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43,368,885,68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266,062,618 원이며

○ 그 차인금액은 4,872,806,748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4,872,806,748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206,900,000원

• 사고이월 3,130,991,130원

• 계속비이월 원

• 보조금 집행잔액 70,822,78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464,092,830원이다.

3. 199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 총괄결산현황은

○ 세입예산액 9,087,599,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41,349,978 원이며

○ 세출예산원액 10,196,758,38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36,684,092 원이며

○ 그 차인금액은 2,204,665,886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2,204,665,886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1,623,686,010원

• 계속비이월 원

• 보조금 집행잔액 3,685,0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77,294,816원이다.

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931,787,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6,636,782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993,120,38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06,293,410 원이다.
- 그 차인잔액은 150,343,372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150,343,372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72,705,000원
 - 계속비이월 원
 -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7,638,372원이다.

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901,334,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84,750,068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949,160,00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46,939,090 원이다
- 그 차인잔액은 37,810,978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체무상환액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37,810,978 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원
 - 계속비이월 원
 -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7,810,978 원이다.

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36,669,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077,156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36,669,00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000,000 원이다

○ 그 차인잔액은 6,077,156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6,077,156 원은
의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원
- 계속비이월 원
-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077,156 원이다.

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86,796,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8,443,576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86,796,00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1,000,000 원이다
- 그 차인잔액은 107,443,576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채무상환액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107,443,576 원은
의년도에 이월한다.
- 의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원
 - 계속비이월 원
 -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7,443,576 원이다.

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107,553,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9,712,525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07,553,00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000,000 원이다
- 그 차인잔액은 36,712,525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36,712,525 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원
 - 계속비이월 원
 -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6,712,525 원이다.

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액 487,806,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0,024,462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487,806,00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6,339,402 원이다

○ 그 차인잔액은 3,685,060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3,685,060 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원

• 계속비이월 원

• 보조금 집행잔액 3,685,06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원이다.

사.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 277,745,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8,583,123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77,745,00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7,515,080 원이다

- 그 차인잔액은 201,068,043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201,068,043 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원
 - 계속비이월 원
 -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1,068,043 원이다.

아. 공유임야관리사업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 100,092,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9,084,876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00,092,00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909,070 원이다

○ 그 차인잔액은 99,175,806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99,175,806 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원

• 계속비이월 원

•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9,175,806 원이다.

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 세입예산 6,057,817,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58,037,410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6,057,817,000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95,688,040 원이다

○ 그 차인잔액은 1,562,349,370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1,562,349,370 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1,550,981,010 원

• 계속비이월 원

•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368,360 원이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원)

과 목	구 分	예 산 액 ⑦	정수결정액 ⑧	수 남 액			미 수 남 액 (⑨ - ⑩)	미 수 남 액 처리	비 율
				수 남 총 액 ⑩	과오남반환액 ⑪	실제수남액 ⑨-(⑩⑪)			
합 계		44,433,548,000	52,688,169,613	51,786,929,684	6,710,340	51,780,219,344	907,950,269		907,950,269
일 반 회 계	계	35,345,949,000	42,376,048,821	42,143,206,556	4,337,190	42,138,869,366	237,179,455		237,179,455
	지방세	4,504,721,000	4,771,679,368	4,615,493,978	455,820	4,615,038,158	156,641,210		156,641,210
	보통세	4,287,721,000	4,431,529,070	4,358,521,020	455,820	4,358,065,200	73,463,870		73,463,870
	목적세	151,000,000	205,149,060	185,943,420		185,943,420	19,205,640		19,205,640
	과년도수입	66,000,000	135,001,238	71,029,538		71,029,538	63,971,700		63,971,700
	개발부담금								
	세외수입	8,094,531,000	14,862,293,003	14,785,636,128	3,881,370	14,781,754,758	80,538,245		80,538,245
	경상적수입	2,495,553,000	2,044,460,526	2,023,735,976	3,881,370	2,019,854,606	24,605,920		24,605,920
	임시적수입	5,598,978,000	12,817,832,477	12,761,900,152		12,761,900,152	55,932,325		55,932,325
	지방교부세	15,802,000,000	15,802,000,000	15,802,000,000		15,802,000,000			
	지방교부세	15,802,000,000	15,802,000,000	15,802,000,000		15,802,000,000			
	보통분	14,683,000,000	15,802,000,000	15,802,000,000		15,802,000,000			
	특별분	1,119,000,000							
	증액교부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6,944,697,000	6,940,076,450	6,940,076,450		6,940,076,450			
	국고보조	2,621,607,000	2,561,950,910	2,561,950,910		2,561,950,910			
	도비보조	4,323,090,000	4,378,125,540	4,378,125,540		4,378,125,540			

세입결산 총괄

(단위: 원)

구 분 과 목	예 산 액 ⁽²⁾	정수결정액 ⁽⁴⁾	수 납 액			미 수 납 액 ⁽⁴⁾⁻⁽⁵⁾	미 수 납 액 처리 결손처분	비 율 의 년 도 이 월 ⁽³⁾⁽⁴⁾⁽⁵⁾
			수 납 총 액 ⁽⁵⁾	과오납반환액 ⁽³⁾	실제수납액 ⁽⁵⁾⁻⁽³⁾⁽⁶⁾			
계	9,087,599,000	10,312,120,792	9,643,723,128	2,373,150	9,641,349,978	670,770,814		670,770,814
특 별 회 계	상 수 도 특별회계	931,787,000	961,080,194	956,636,782		956,636,782	4,443,412	4,443,412
	주 택 사 업 특별회계	901,334,000	2,032,548,341	1,384,750,068		1,384,750,068	647,798,273	647,798,273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36,669,000	36,077,156	36,077,156		36,077,156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	186,796,000	208,443,576	208,443,576		208,443,576		
	영 세 민 생 활 안 경 기 금 특별회계	107,553,000	132,758,855	119,712,525		119,712,525	13,046,330	13,046,330
	의 료 보 호 기 금 특별회계	487,806,000	480,024,462	480,024,462		480,024,462		
	농 공'지 구 조 성 사 업 특별회계	277,745,000	274,065,922	260,583,123		268,583,123	5,482,799	5,482,799
	공 유 임 야 관 리 사 업 특별회계	100,092,000	129,084,876	131,458,026	2,373,150	129,084,876		
	지 방 양 여 금 특별회계	6,057,817,000	6,058,037,410	6,058,037,410		6,058,037,410		

세출결산 총괄

(단위: 원)

과 목	구 分	예 산 액 ①	예산성립후 증감액 ④	예 산 현 액 ③=①+④	지출원인행위액 ⑤	지 출 액 ⑥	의년도이월액 ⑦	불 용 액 ⑧-⑥-⑦	비고
	합 계	44,433,548,000	9,132,096,060	53,565,644,060	49,664,323,850	44,702,746,710	4,961,577,140	3,901,320,210	
일반회계	소 계	35,345,949,000	8,022,936,680	43,368,885,680	40,603,953,748	37,266,062,618	3,337,891,130	2,764,931,932	
	의회비	281,855,000		281,855,000	268,581,008	268,581,008		13,273,992	
	일반행정비	9,702,663,000	44,960,000	9,747,623,000	9,119,887,530	9,119,887,530		627,735,470	
	사회복지비	4,480,980,000	1,076,896,000	5,557,876,000	5,243,825,240	5,227,463,240	16,362,000	314,050,760	
	산업경제비	5,891,767,000	2,874,565,000	8,776,332,000	8,450,125,080	7,184,725,430	1,265,399,650	316,206,920	
	지역개발비	10,551,183,000	3,766,079,680	14,317,262,680	13,076,140,750	12,132,015,460	944,125,290	1,241,121,930	
	문화및체육비	3,454,692,000	406,682,000	3,861,374,000	3,797,838,850	2,685,834,660	1,112,004,190	63,535,150	
	민방위비	533,707,000		533,707,000	497,355,060	497,355,060		36,351,940	
	지원및기타경비	449,102,000	△146,248,000	302,856,000	150,200,230	150,200,230		152,655,770	

세출결산 총괄

(단위: 원)

회계별 구 분	예 산 액 ①	예산성립후 증감액 ④	예 산 현 액 ③-②+④	지출원인행위액 ⑤	지 출 액 ⑥	의년도이월액 ⑦	불 용 액 ⑧-⑨-⑩	비고
합 계	9,087,599,000	1,109,159,380	10,196,758,380	9,060,370,102	7,436,684,092	1,623,686,010	1,136,388,278	
특 별 회 계	상 수 도 특 별 회 계	931,787,000	61,337,380	993,120,380	878,998,410	806,293,410	72,705,000	114,121,97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901,334,000	1,047,826,000	1,949,160,680	1,346,939,090	1,346,939,090		602,220,910
	새마을소득금고 특 별 회 계	36,669,000		36,669,000	30,000,000	30,000,000		6,669,000
	새마을소득금고 특.별 지 원사 업	186,796,000		186,796,000	101,000,000	101,000,000		85,796,000
	영 세 민 생 활 안 정 기 금 특 별 회 계	107,553,000		107,553,000	83,000,000	83,000,000		24,553,000
	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	487,806,000		484,806,000	476,339,402	476,339,402		11,466,598
	농 공 지 구 조 성 사 업 특 별 회 계	277,745,000		277,745,000	67,515,080	67,515,080		210,229,920
	공 유 임 야 관 리 사 업 특 별 회 계	100,092,000		100,092,000	29,909,070	29,909,070		70,182,930
	지 방 양 여 금 특 별 회 계	6,057,817,000		6,057,817,000	6,046,669,050	4,495,688,040	1,550,981,010	11,147,950

세입·세출결산상잉여금 처리상황

구 분 회계별	세입결산액 (가)	세출결산액 (나)	세계잉여금 (가-나)	세계잉여금처분내역				현 년도 채무 상환	
				익년도이월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51,780,219,344	44,702,746,710	7,077,472,634	4,961,577,140	206,900,000	4,754,677,140	74,507,848	2,041,387,646	
일반회계	42,138,869,366	37,266,062,618	4,872,806,748	3,337,891,130	206,900,000	3,130,991,130	70,822,788	1,464,092,830	
특별회계	9,641,349,978	7,436,684,092	2,204,665,886	1,623,686,010		1,623,686,010	3,685,060	577,294,816	
상수도 특별회계	956,636,782	806,293,410	150,343,372	72,705,000		72,705,000		77,638,372	
주택사업 특별회계	1,384,750,068	1,346,939,090	37,810,978					37,810,978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36,077,156	30,000,000	6,077,156					6,077,156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	208,443,576	101,000,000	107,443,576					107,443,576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19,712,525	83,000,000	36,712,525					36,712,525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80,024,462	476,339,402	3,685,060				3,685,060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268,583,123	67,515,080	201,068,043					201,068,043	
공유임야관리사업 특별회계	129,084,876	29,909,070	99,175,806					99,175,806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6,058,037,410	4,495,688,040	1,562,349,370	1,550,981,010		1,550,981,010		11,368,360	

審查報告書

1993年 12月 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審查經過

- 가. 提出日字 및 提出者 : 1993年 12月 4日 平昌郡守
- 나. 回附日字 : 1993年 12月 6日
- 다. 上程日字 : 第20回 平昌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第1次豫算決算特別委員會 —— 1993. 12. 6 上程
 - 第2次豫算決算特別委員會 —— 1993. 12. 8 上程
 - 第7次豫算決算特別委員會 —— 1993. 12. 17 議決

2. 提案說明要旨

(提案說明者 : 財務課長 李永德)

가. 1992年度 一般會計는

- 歲入豫算과 前年度 移越事業實量 包含한 歲入總額 433억6,900만원에
對하여 收納額은 421억3,900만원이며, 歲出額은 372억6,600만원이며,
그 殘額은 48억7,300만원으로서 익년도 移越金을 除外한 純歲計剩餘金
14억6,400만원임.
- 一般會計豫算轉用은 3,697만1천원으로 期末手當 引上으로 因한,
不足額外 10件에 豫算을 轉用 하였음.

나. 1992年度 上水道 特別會計等 8個 特別會計는

- 歲入豫算과 前年度 移越事業費를 包含한 歲入總額은 101억 9,700만 원에 對하여 收納額은 96억 4,100만 원이며, 支出額은 74억 3,700만 원으로 그 殘額은 22억 400만 원이며 翌年度移越金을 除外한 純歲計剩餘金은 5억 7,700 만 원임.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辛教善)

가. 一般會計에 있어서

- 豫算은 1會計年度의 收入과 支出의 豫定表이며, 1年間의 財政計劃 이므로 歲入歲出推計에 正確을 要하는 주요한 事案으로 增·減要因이 發生되면 更正을 通하여 健全財政이 堅持 되도록하여야 하며,
- 歲入豫算에 豫算編成치 않고 徵收決定한 稅外收入은 地方財政法 第29條에 依據 歲入豫算에 計上되어야 하며, 歲入豫測이 不透明한 松亭宅地開發 分讓金의 架空歲入을 歲入推計 하였으며,
- 過年度 歲入豫算을 缺損處分 없이 移越하면서 다음年度 豫算에 計上치 않고 漏落되는 事例가 反復되고 있으며,
- 豫算額에 比하여 支出比率이 낮은 것은 事業 優先順位에 依據 再投資하지 않음으로, 不用額이 過多發生 健全財政 堅持와 住民에게 질높은 行政서비스를 提供치 못하였으며, 매년 數件의 移越事業의 反復 發生은 止揚되어야 함.

- 豫算轉用은 地方財政法과 豫算會計法에 依據 轉用되어야 하며,追更時 調整으로 最小化 시켜야 함.
- 不用額의 過多發生은 可用財源을 縣案事業에 投資치 않고豫算을 死滅하는 結果이며,
- 繼續事業은 地方財政法 第33條의 規定에 依據 地方議會의 承認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制度的으로 活用되지 못하고 있음.

나. 特別會計에서는

- 使用料 및 未收金 過多發生과 歲入豫算 編成된豫算을 收納處理치 않는 등 管理에 徹底를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不用額 過多發生으로 特別會計 設置目的을 달성치 못하고 있으므로 徵收對策 및豫算運營 方案 講究가 要求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質疑要旨	答辯要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有財產 貸貸料 未徵收 事由는? ○ 92年度 決算上 不均衡 豫算의 過多. 過少 計上의 偏差가 생기는 原因은? ○ 事故移越이 많은 理由는? ○ 不用額 應分이 많은 事由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貸貸料를 算定時 公示地價 上昇으 로 地域住民이 反撥, 納付치 않으 므로 未納이 되었음. ○ 歲入豫測과 追更時 調整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發生하였음. ○ 事業發注가 늦어졌고, 明示移越을 기피함으로 發生하였음. ○ 入札差額이 대부분이며, 豫算部署 와 事業部署의 有機的 協調 未洽 으로 發生되었음.

5. 討論要旨

"없 음"

6. 審査結果

"原案可決"

7. 少數意見 要旨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92년도 평창군예비비지출승인(안)

의안 146

제안년월일 : 1993. 12
제안자 : 평창군수



21.12.21

1.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19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 요구합니다.

2. 예비비지출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의년도 이월액	불용액	비 고
합 계	271,784	146,246	146,246			24,440
재해대책		20,640	20,640			
청소관리		23,363	23,363			
체육행사		75,702	75,702			
농산관리		7,955	7,955			
도시계획관리		2,361	2,361			
인사고시		1,066	1,066			
사무관리		8,177	8,177			
지적관리		1,982	1,982			
일반지역관리		383	383			
일반지역관리		4,617	4,617			

예비비지출

19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71,784,000원으로서 동절기 설해 응급 복구 제설장비 구매와 22건으로서 146,246,000원을 지출하고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分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위액 (나)	지 출 액 (다)	이월액 (나 - 다)	불용액 (가 - 나)	처 리 일 자			사 유
세 향	세세향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승인 일자	
합 계		146,246,000	146,246,000	146,246,000						
재해대책	주 요 사업비	13,640,000	13,640,000	13,640,000			1. 8	1. 8	1. 8	동절기설해응급 복구장비구매
재해대책	주 요 사업비	4,000,000	4,000,000	4,000,000			1. 18	1. 18	1. 18	폭설로인한제설 작업
청소관리	기 본 경상비	6,960,000	6,960,000	6,960,000			3.26	3.26	3.26	전부면소속환경 미화원퇴직에 따른퇴직금
재해대책	주 요 사업비	3,000,000	3,000,000	3,000,000			3.19	3.19	3.19	도암지역제설 작업비
체육행사	기 본 경상비	66,769,000	66,769,000	66,769,000			5.14	5.14	5.14	제27회도민체전 출전경비지원
청소관리	기 본 경상비	402,000	402,000	402,000			5.27	5.27	5.27	환경미화원퇴직 금
청소관리	기 본 경상비	382,000	382,000	382,000			6.30	6.30	6.30	환경미화원퇴직 금
청소관리	기 본 경상비	7,179,000	7,179,000	7,179,000			7.12	7.12	7.12	도암면환경미화 원퇴직금
농산관리	주 요 사업비	5,703,000	5,703,000	5,703,000			8.17	8.17	8.17	도암병곡동방제 등약대
농산관리	주 요 사업비	2,252,000	2,252,000	2,252,000			8.20	8.20	8.20	우박피해농가 비료지원
도시계획 관리	경 상 사업비	2,361,000	2,361,000	2,361,000			9.14	9.14	9.1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따른배상 금
인사고시 관리	기 본 경상비	1,066,000	1,066,000	1,066,000			10.6	10.6	10.6	지방공무원명예 퇴직및생활민원 행정전산로지대 장정리원

구 分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위액 (나)	지 출 액 (다)	이월액 (나 - 다)	불용액 (가 - 나)	처 리 일 자			사 유
세 향	세 세 향						지출 결정 일자	지 출 일자	승 인 일자	
서무관리	기 본 경상비	3,812,000	3,812,000	3,812,000			10. 6	10. 6	10. 6	지방공무원명예 퇴직 및 생활민원 행정전산토지대 장 정리원
지적관리	기 본 경상비	1,982,000	1,982,000	1,982,000			10. 6	10. 6	10. 6	토지대장정리원 퇴직금
일반지역 관	기 본 경상비	383,000	383,000	383,000			10. 6	10. 6	10. 6	복지회관관리원 퇴직금
일반지역 관	기 본 경상비	4,617,000	4,617,000	4,617,000			10. 6	10. 6	10. 6	복지회관관리원 퇴직금
서무관리	기 본 경상비	990,000	990,000	990,000			10. 16	10. 16	10. 16	교육홍보계장 순직장례비
서무관리	기 본 경상비	2,875,000	2,875,000	2,875,000			10. 16	10. 16	10. 16	교육홍보계장 순직장례비
서무관리	기 본 경상비	500,000	500,000	500,000			10. 16	10. 16	10. 16	교육홍보계장 순직장례비
체육행사	기 본 경상비	8,933,000	8,933,000	8,933,000			10. 24	10. 24	10. 24	제4회도내일주 역전마라톤출전 경비 및 환영행사
청소관리	기 본 경상비	4,618,000	4,618,000	4,618,000			11. 2	11. 2	11. 2	도암면환경미화 원 퇴직금
청소관리	기 본 경상비	959,000	959,000	959,000			12. 24	12. 24	12. 24	도암면환경미화 원 퇴직금
청소관리	인건비	2,863,000	2,863,000	2,863,000			12. 30	12. 30	12. 30	평창읍환경미화 원 퇴직금

1992年度平昌郡一般會計豫備費支出承認의件

審查報告書

1993年 12月 日

1. 審查經過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3年 12月 4日 平昌郡守
- 나. 回附日字 : 1993年 12月 6日
- 다. 上程日字 : 第20回 平昌郡議會(定期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第1次豫算決算特別委員會 ————— 1993. 12. 6 上程
 - 第2次豫算決算特別委員會 ————— 1993. 12. 8 上程
 - 第7次豫算決算特別委員會 ————— 1993. 12. 17 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企劃室長 高麗植)

- 1992年度 一般會計豫備費豫算額은 2억7,178만4천원으로서 1억4,624만6천원을 支出決定하여 冬節氣 雪害應急復舊 除雪裝備 購入 외 11件에 1억4,624만6천원 全額을 支出 하였음.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辛教善)

- 豫備費 支出內譯은
 - 冬節氣 除雪裝備 購入 및 除雪作業費로 2,064만원, 도열병공동방재 농약대 570만3천원, 雨雹被害農家 肥料支援 225만천2원의 執行은 豫備費 執行事由가 妥當함이 認定되나,
 - 賠償金 236만1천원과 退職手當 不足分 3,522만3천원을 數回에 걸쳐 使用한 것은 機關運營의 基本的 經費이므로 該當科目에 計上함이妥當하며,

- 매년 반복되는 道民體典 出戰經費, 道內一周 역전마라톤經費 및 환영행사에 7,570만2천 원을 執行한 것은豫備費 使用目的에 反하는 事項으로 該當豫算科目에 計上함이妥當하고,
- 同一事案을 3회에 걸쳐 執行하는 事例는 今後 止揚되어야 할 것임.

4. 質疑 및 答辯要旨

質疑要旨	答辯要旨
○豫備費를 쓸 수 있는 法의 내용이 明示되 있는데 任意로支出한 事由는?	○92年度豫備費支出은一部規定에違背되게 執行되었음.
○道民體典出戰行事費에豫備費를支出한 것은?	○부득이 하였으나, 잘못되었다고 봄.
○環境美貨員退職金을豫備費에서支出한 事由는?	○93年以前에는 하지 못하였음. 93年以後부터는 制度를導入, 進行中에 있음.
○職員殉職葬禮費를 3회에 걸쳐支出한 事由는?	○豫備費는豫測할 수 없는 일의發生을對備, 計上支出하고 있으며支出은支出科目이 다르기 때문에 세번 나눠서支出하였음.

5. 討論要旨

: 없 음.

6. 審查結果

: 原案可決

7. 少數意見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평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40

제출년월일 : 1993. 11.

제출자 : 평창군수

317-2
100

□ 제안이유

'9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행정수행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조치에 따라 '평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92. 1. 1일부터 설치·운영해 오던 평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94년 1. 1. 일 부로 폐지한다.
2. 평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의 폐지에 따른 등록별회계의 임여금은 '94. 1. 1. 부터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로 이입한다.

□ 근거

1. '9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내무부, 강원도)
2. 강원도 예산13310-505('93. 9. 21)호

□ 첨부

— 평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부,

평장군조례 제 호

평장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평장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5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양여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 ①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금 재원(이하 "양여금재원"이라 한다)을 배분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정비사업 : 양여금재원의 1,000분의 705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 양여금재원의 1,000분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질오염방지사업 : 양여금재원의 1,000분의 170에 해당하는 금액
4. 청소년육성사업 : 양여금재원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양여금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양여금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평창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 첨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1

제출년월일 : 1993. 11.

제출자 : 평창군수



제안이유

'9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행정수행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조치에 따라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골자

1.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제34조의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한다.
2. 제34조의 폐지에 따라 등조례 제35조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조항을 삭제하며,
3. 제34조의 폐지에 따라 등조례 제36조의 특별회계의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4. 개정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일반회계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근거

1. '9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내무부, 강원도)
2. 강원도 예산13310-505('93. 9. 21)호

첨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평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기 정 안
<p>제34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p> <p><u>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u></p> <p><u>임야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립관</u></p> <p><u>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u></p> <p>① 공유립관리특별회계 설치는 임야관리 주관과에 설치하고 국·공유립관리에 관 한 매각, 취득, 대부등 업무를 담당한다.</p>	<p>제34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p> <p>(삭제)</p> <p>② (삭제)</p>
<p>제35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u>공유립</u></p> <p><u>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u></p> <p><u>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수</u></p> <p><u>입금이 특별회계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u></p> <p><u>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u></p> <p>1. <u>공유재산(공유립 제외)의 매각대, 대</u> <u>부료, 사용료 : 그 수입금액의 10%</u></p> <p>2. <u>공유임야 매각대, 대부료 : 그 수입</u> <u>금액의 100%</u></p> <p>3. <u>국유재산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u> <u>변상금 등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u></p> <p>4. <u>일반회계의 전입금 : 부족재원</u></p> <p>② <u>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유</u> <u>립구입비 및 관리비에 한하여 지출하여</u> <u>야 한다.</u></p> <p>③ <u>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측할 수 없</u> <u>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u></p>	<p>제35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삭제)</p> <p>② (삭제)</p> <p>③ (삭제)</p>

관 계 법령 발췌 서

■ 지방재정법

- 제5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범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제72조(공유재산의 범위·구분 및 종류) ① 이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 제73조(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74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 ②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명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제35조, 제36조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9
------------	-----

제출년월일 : 1993. 11.

제출자 : 평창군수



□ 제안이유

'9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조치에 따라 '평창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평창군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한다.

□ 주요골자

- 명칭변경 :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평창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한다.
- 조례폐지 : '평창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한다.
- 회계전환 : 등폐지조례에서 운영하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평창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한다.

□ 근 거

- '9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내무부, 강원도)
- 강원도 예산13310-505('93. 9. 21)호

□ 첨 부

—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평창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하 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응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응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하 "특별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제 2 장 금 고 운 영

제3조(응자대상사업) 응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 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 가. 경제작물 :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 나. 임업 : 잠실건립, 농발조성
 - 다. 축산 : 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등

라. 수 산 : 양어장, 양식사업, 수산시설등

마. 양 묘

바. 꿀 벌

사.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농지조성(개답)

나. 마을농장

다. 초지조성

라.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마. 구판장

바. 기타 생산기반조성

3. 특별지원

가. 마을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제4조(용자대상) ①용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2.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

3.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

4.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②군수가 제1항의 용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용자한도) ①용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용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용자금의 대부이율은 년 3퍼센트이내로 한다.

제6조(대부기간) ① 응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 거치 2년이내
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 거치 3년이내
3. 장기성 사업자금 — 3~5년 거치 3년이내 상환

②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그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른다.

1. 단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1년이내의 사업
2. 중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2년이상 3년이내의 사업
3. 장기성 사업 — 사업수입기간이 3년이상 10년이내의 사업

제7조(응자금 대부신청) ① 응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 또는 가구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마을의 대표자(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당해 리개발위원 중에서 5명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신청 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2항의 인적담보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응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응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불일 수 있다.

제8조(응자금의 상환) ① 이 응자금은 대부기간중 사업수입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응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 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응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9조(감독) 군수는 자금의 응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특별지원사업

제10조(응자대상마을) ① 응자대상마을은 군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기 응자 받은 마을 제외)하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평창군지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2.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② 군수가 사업대상마을을 선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평창군지회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응자대상사업) ① 응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② 응자대상사업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가구단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다만, 마을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응자한도 및 이율) ① 응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이상 1억원 범위내로 한다.

② 응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제13조(대부기간) 응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응자금 대부신청) ① 응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공

동명의(가구의 경우 개인명의)의 별지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사업참가자 전원이 상호 연대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가구단위로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마을주민 2인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 ③ 본 응자금의 경우에도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응자금의 상환) 응자금의 상환은 년 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 30, 12. 31)로 한다.

제16조(응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평창군지회와 협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상환금을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시중은행 연체 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군수는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및 3월후 각각 10월이내의 상환기한을 불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응자특례) ①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으로서 정착의지와 자립의욕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특별지원자금을 응자할 수 있다

②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 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된 자금은 주민소득증대사업 자금으로 응자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응자한도액은 가구당 일백만원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4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지방이주 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 융자에 따른 융자기간, 융자조건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9조(우수농고생 영농정책 특별지원금 융자특례) ①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 정착의지와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모범학생에 대하여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의 추천에 의하여 지원대상 학생의 보호자 명의로 특별지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책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생 1인당 200백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3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 제1항내지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우수농고생 영농정책 특별지원금 운용규정(내무부장관 훈령 제941호)에 의한다.

제20조(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특별지원 융자특례) ① 화훼기술 육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농업교육협회 회장단이 추천한 농업계 고등학교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의 화훼기술 배양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교당 일천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 제1항내지제4항에서 규정한 사업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화훼기술육성 특별지원금운용규정(내무부 훈령 제777호)에 의한다.

제21조(1면1특화사업 자금 융자특례) ① 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등을 지역 명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면1특화사업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1면1특화사업 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면당 4천5백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자금의 대부기간은 연리 3퍼센트,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감독) 군수는 자금의 응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평창군지회와 수시 지도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 4 장 특별회계의 설치

제23조(설치) 금고 및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4조(세입·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성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을 위한 응자금으로 한다.

제2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운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 5 장 보 칙

제27조(응자금의 대출) 군수는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응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28조(증복 응자의 금지) 응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응자금상환 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응자할 수 없다.

제29조(응자금의 반환) 군수는 응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세마을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자금을 응자목적이 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30조(강제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1. 상환의무자가 등록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1조(감면조치) 자금을 응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금흡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농가대여양곡관리특별회계 소관자금(현물을 포함한다)과 복지자금운영특별회계 소관자금, 농어촌진흥사업기금특별회계 소관자금은 전액을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재원으로 흡수한다. 다만, 농가대여양곡관리특별회계 소관자

금증 농가대여양곡전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경지정리 사업에 전용하여야 할 재원은 일반 회계로 이관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조례 제19호 농가대여양곡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평창군조례 제249호 농촌진흥사업기금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 평창군조례 제313호 복지자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3항의 폐지조례에 의거 농가에 대여된 양곡, 일시전용금, 움자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회수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77. 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88. 4. 30. 이 조례는 지방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 생략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기금흡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및 평창군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의 기금 및 임여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평창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움자된 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움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새마을소득금고 움자금 상환에 대하여 상환기간이 경과 하여 상환하는 움자금의 연체율과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 움자특례에 의하여 움자받은 움자금의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새마을소득사업자금대부신청서

1. 마을명 : 군면리마을
 2. 대부신청금액 :
 3. 대부신청사유 :
 4. 상환방법 및 기간 :
 5. 대부신청사업계획 :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위치 : 라. 사업의필요성 :
 마. 사업실시기간 : 바. 재원계획 :

(단위 : 원)

총사업비	용자	자부담	자부담방법	비고

※ 총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사. 사업수지예산

(단위 : 원)

총수익	총비용	순수익	비고

※ 사업수지예산명세 : 별첨

6. 마을규약 :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새마을소득사업의 용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199년 월 일
 ○○리(주민등록번호)
 성명 대표자인

위 신청인이 귀군으로부터 차용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합니다.

199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성주성주성주성주성	소명소명소명소명소명	인
연대보증인	주성주성주성주성주성	소명소명소명소명소명	인
연대보증인	주성주성주성주성주성	소명소명소명소명소명	인
연대보증인	주성주성주성주성주성	소명소명소명소명소명	인
연대보증인	주성주성주성주성주성	소명소명소명소명소명	인

평창군수 귀하

새마을 所得事業 運營管理 特別會計 科目構造

< 세 입 >

새마을 소득금고

(관) 사 업 수 입
(항) 사 업 수 입
(관) 사 업 외 수 입
(항) 이 월 금
(항) 응 자 금 회 수
(항) 과년도 수 입

< 세 출 >

새마을 소득금고

(관) 사 업 비
(항) 사 업 비
(세항))) 소득금고 운영
(관) 예 비 비
(항) 예 비 비
(세항) 예 비 비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관) 사 업 수 입
(항) 사 업 수 입
(관) 사 업 외 수 입
(항) 이 월 금
(항) 응 자 금 회 수
(항) 과년도 수 입

(관) 사 업 비
(항) 사 업 비
(세항)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세항) 응자금반환
(관) 예 비 비
(항) 예 비 비
(세항) 예 비 비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5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
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상환및상환금운용규정(내무부훈령 제934호, `88.4.6)

제2조(적용범위) 특별지원금의 상환 및 상환금운용에 관하여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시·
도, 시·군·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하 "특별지원사업"이라 한다)자금운영관리조
례에 의한다.

■ 우수농고생영농정착특별지원금운용규정(내무부훈령 제941호, `88.6.10)

제2조(특별지원금의 운영 및 관리) 특별지원금은 시·도 및 시·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
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운영관리한다.

■ 화훼기술육성특별지원금운용규정(내무부훈령 제777호, `84.3.27)

제2조(특별지원금의 운영 및 관리) 특별지원금은 시·도 및 시·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
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운영관리한다.

■ 평창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 평창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의안 번호	107
----------	-----

제출년월일 : '93. 12.

제출자 : 평장군의회



73
23

1. 제안이유

'93 공유재산 당초 관리계획 및 제1차 변경계획안 이후 발생된 관련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평장군의회 의결을 얻어 93관리계획을 첨부된 안과 같이 집행코자 함임.

2. 변경계획안 주요내용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요하는 관련 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확충사업 평장 상수도 확장사업, 종합문화예술회관 건설사업, 농촌지도사업, 국도31호선 방림삼거리 구간 확장사업등인바 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용도 및 사유	건수	면적	추정가액	소관부서
매 입	쓰레기 매립장 설치	12	35,450	222,353	환경보호과
교환취득	종합문화예술회관 부지	5	24,722	62,370	문화공보실
" 처분	한일산업 목초지 대부지	9	24,466	61,162	"
매 각	31번 국도 확장 용지	2	147	2,352	국토관리청
신 축	평장상수도 관리 건물	4	174.96	14,327	도 시 과
"	농기계 공작실	1	165	40,394	농촌지도소

3. 관련법규

-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 나.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동시행규칙 제29조

총괄표 (7-1)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分			합 계			당 초(상반기)			＼1차변경(상반기)			2 차변경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물기	80 9	529,401 939.94	1,217,374 212,331	7 1	15,901 161.58	309,749 9,600	56 3	453,328 438.4	622,902 148,000	17 5	60,172 339.96	284,723 54,731
	1) 매입	토지물기	71 1	499,413 161.58	724,277 9,600	6 1	13,970 161.58	203,599 9,600	53	449,993	298,325	12	35,450	222,353
	2)교환취득(대체)	토지물기	9	29,988	493,097	1	1,931	106,150	3	3,335	324,577	5	24,722	62,370
	3) 기타취득	토지물기	8	778.36	202,731				3	438.4	148,000	5	339.96	54,731
	4) 매각	토지물기	284 2	118,861 500.94	9,001,366 17,930	21 1	11,646 419.94	240,724 11,758	252 1	82,602 81	8,687,128 6,172	11	24,613	63,514
처분	5)교환매각(절거)	토지물기	23 2	36,616 500.94	306,600 17,930	7 1	7,941 419.94	108,763 11,758	7 1	4,209 81	136,675 6,172	9	24,466	61,162

93년도 취득재산 목록(7-2)

[일 반 회 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주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 소 성 명
	지 목	소 재 지	수 량				
1	전	명장 종부리 508-71	876	9023	하반기	쓰레기 매립장부지	명장 하리 45 고 진 배
2	"	984-1	618	6365	"	"	"
3	도로	984-2	53	546	"	"	"
4	전	984-3	1, 101	11, 340	"	"	"
5	임야	미탄 백운리 297-2	558	558	"	"	정선 군사복읍사복리 269 이 상 신
6	전	대화 대화리 734-1	2, 787	16, 165	"	"	대화 대화리 714 정 연 득
7	"	734-2	4, 436	25, 729	"	"	" 672 박 승 연
8	"	734-3	3, 873	23, 625	"	"	" 1319 이 진 호
9	"	734-4	7, 608	46, 409	"	"	" 779 이 용 우
10	"	734-5	3, 865	23, 576	"	"	" 1319 이 진 호
11	"	734-7	7, 358	44, 884	"	"	권 인 성 70
12	"	735	2, 317	14, 133	"	"	이 용 779 우
13	건물	명장 종부리 497-4	165	40, 394	"	농기계 공작실	명장 군 수
계	토지 건물 기타	12필지 1동	35, 450 165	222, 353 40, 394			

93년도 취득재산 목록(7-2)

[특별회계]

(단위 : m.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주 소	소유자 성 명
	지 목	소 재 지	수 량					
1	건물	명장 후평리 348-17	53.04	4,084	하반기	상수도 취수장 펌프실	명장군수	
2	"	"	53.46	4,544	"	상수도 취수장 관리사		"
3	"	명장 하리 산3-2	15	1,155	"	상수도 정수장 염소투입실		"
4	"	"	53.46	4,544	"	상수도 정수장 관리사		"
계	토지 건물 기타	4동	174.96	14,327				

93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7-3)

(일반회계)

단위 : 원, 전원

일련 번호	재산의표시				교환 대상수량	추정 가액	교환 시기	교환사유	교환 대상자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1	교환취득	임야	평장증부리 산64-2	242	242	617	하반기	종합문화 예술회관 부지	한일산업 (주)
2	"	"	" 산66-6	11,603	11,603	29,007	"	"	"
3	"	"	" 산66-12	8,650	8,650	21,625	"	"	"
4	"	"	" 산66-13	1,936	1,936	4,936	"	"	"
5	"	"	" 산66-14	2,291	2,291	6,185	"	"	"
6	교환처분	목장 용지	도암횡계리 464	5,322	5,322	13,305	"	한일산업 목장용지	평장군수
7	"	"	" 465	2,631	2,631	6,577	"	"	"
8	"	"	" 466	202	202	505	"	"	"
9	"	"	" 467	575	575	1,437	"	"	"
10	"	"	" 468	5,709	5,709	14,272	"	"	"
11	"	"	" 469	192	192	480	"	"	"
12	"	"	" 470	2,661	2,661	6,652	"	"	"
13	"	"	" 471	3,273	3,273	8,182	"	"	"
14	"	"	" 472	3,901	3,901	9,752	"	"	"
계	교환취득	토지 건물 기타	5필지		24,722	62,370			
	교환처분	토지 건물 기타	9필지		24,466	61,162			

93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7-4)

(일반회계)

(단위 : m,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매각대상 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사유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1	도로	방림 방림리 762-11	105	105	1,680	하반기	국도변입부지
2		762-12	42	42	672	"	"
계	토지 건물 기타	2필지		147	2,352		

199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 동의

평창군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199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 외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신규사업]

○ 일반회계

○ 취득

(단위 : 띠, 천 원)

건 명	수 량	금 액
계	. 12필/35.450, 1동/165	262,747
①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 12필/35.450	222,353
② 농기계 공작실	. 1동/165	40,394

○ 교환

(단위 : 띠, 천 원)

건 명	수 량	금 액
계	. 5필/24.722, 9필/24.466	123,532
○ 상호교환		
- 취득 (사유지)	. 5필/24.722	62,370
- 처분 (군유지)	. 9필/24.466	61,162

○ 매각

(단위 : 평, 천원)

건 명	수 량	금 액
계	. 2필/147	2,352
○ 국도편입부지	. 2필/147	2,352

○ 특별회계

○ 취득

(단위 : 평, 천원)

건 명	수 량	금 액
계	. 4동/174.96	14,327
○ 평창상수도건물	. 4동/174.96	14,327

'94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

의 안	
번 호	148

제출년월일 : 93. 12.

제출자 : 평장군수



716-23

1. 제안사유

강원도 회계 13330 - 1029(93. 10. 15)호 '94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걸친 '94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37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함.

2. 관리계획 입안의 기본방향

- 적극적 관리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처분보다는 보존·확대위주로 관리한다.
- '94예산안 및 관련사업계획서와 일치되게 작성하여 집행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 매각은 법적 매각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매각을 허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하며, 가급적이면 군이 필요한 재산과 교환처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 관리계획은 가급적 당초 관리계획에 모두 포함시키도록 작성하여 수시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른 행정 번잡과 비능률을 배제토록 한다.

3. 계획안의 주요내용

'94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하여 입안한 취득·처분·교환등의 '94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가. 총괄

'94년 중 취득재산은 토지 17건 31,744㎡, 건물, 기타 1 건 408㎡이고 처분은 토지 18건 20,335㎡ 건물 기타 3건 1,070㎡이며 대부관리 재산은 606건 785,183㎡임.

나. 취득 ————— 매입 · 교환 · 신축등에 의한 취득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용 도	건수	면적	취득가액	소관부서
계		18	32,152m ²	644,995	
소 계		14	12,594	217,894	
매 입	현대화 시설용 부지	1	2,191	19,719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	4	4,834	29,004	"
	군청직입로 부지	1	291	13,095	재 무 과
	공설묘지 조성 부지	1	3,570	5,355	가정복지과
	계촌시가지 경비 편입부지	2	845	25,350	재 무 과
	용평 노인회관 부지	3	564	34,121	"
	진부보건지소 진입로 부지	1	269	67,250	"
	횡계시가지 편입부지	1	30	24,000	"
소 계		3	19,150	202,101	
교 환	군유림 집단화 수해주택 이전 부지	2 1	8,628 10,522	2,183 119,918	산 림 과 도 시 과
소 계		1	408	225,000	
신 축	영농종합 상황실	1	408	225,000	농촌지도소

다. 처분 ————— 매각 · 교환 · 철거등에 의한 처분 주요 내역은 다음표와

같은바, 이 가운데 매각은 보존 · 확대 위주의 기본 관리방향에 따라 "부표"

매수 신청재산 자체검토 조서에 의거 엄격히 심사하여 매각요건에 합당하는

재산만 매각계획에 반영하였음.

구 分	처 분 사 유 별	건수	면적	처분가액	관 계 기 준	
					법	지침
계		21	21,405m ²	572,223		
소 계		13	1,681	337,604		
매 각	사유건물 점유부지	13	1,681	337,604	95조2항	
소 계		5	18,654	202,439		
교 환	군유림 집단화 수해주택 이전 부지	1 4	8,132 10,522	2,521 199,918	제101조	
소 계		3	1,070	32,180		
철 거 기 타	용도폐지 문화관(평창, 봉평) 봉평 보건지소(도읍가꾸기 저축)	2 1	954 116	26,730 5,450		

라. 대부 _____ 대부관리 재산의 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이 재산은 모두 92. 1부터 3년간을 대부기간으로 설정하여 계약 체결하였기 때문에 94. 12. 31로 그 기간이 종료되는바 사유건물 점유토지와 자경농지가 대부분이므로 기간 종료전에 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95년도 1월중 재계약 체결 하여야 할 대상재산이므로 94관리계획엔 그 세부목록 제출은 생략하고, 다만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만 그 사유를 명시한 대부재산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용목적	건수	면적	연부과 대부료		비고
			'92	'93	
계	606	785, 183m ²	74, 422	87, 193	
대지	251	109, 965	60, 526	71, 818	
농경지	294	580, 332	12, 977	9, 531	
기타	61	94, 886	919	5, 844	

4. 관리법 규 및 지침

- 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
- 나.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등시행규칙제29조
- 다. '94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총괄표 (7-1)

(일반회계)

단위 : m, 천원

구 分			합 계			상 반 기			하 반 기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17	31,744	419,995	12	24,719	371,272	5	7,025	48,723
		건물	1	408	225,000				1	408	225,000
		기타									
	1) 매입	토지	14	12,594	217,894	9	5,569	169,171	5	7,025	48,723
	2) 교환	토지	3	19,150	202,101	3	19,150	202,101			
		건물									
	3) 기타	토지									
		건물	1	408	225,000				1	408	225,000
		기타									
처분	계	토지	18	20,335	540,043	5	18,654	202,439	13	1,681	337,604
		건물	3	1,070	32,180	3	1,070	32,180			
	4) 매각	토지	13	1,681	337,604				13	1,681	337,604
	5) 교환 매각 (절거)	토지	5	18,654	202,439	5	18,654	202,439			
		건물	3	1,070	32,180	3	1,070	32,180			
대부	토건기	지 물 타	545 5 56	690,297 555 94,331							

94년도 취득재산 목록 (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성명
	지목	소재지	수량				
1	답	명장 중부리 497-4	2,191	19,719	상반기	현대화 시설용 부지	명장 중부1리 이창모
2	"	명장 여만리 261-14	3,837	23,022	"	지역농업개발 센타 부지	명장 하리 153-1 이건웅
3	전	" 357-1	367	2,202	"	"	명장 하리 169 이병인
4	답	" 357-32	230	1,380	"	"	명장 여만리 266 김종근
5	"-	" 357-33	400	2,400	"	"	명장 하리 74-4 정기택
6	"	명장 하리 235-12	291	13,095	"	군정 진입로 / 부지	경기도안양시호계3동 경향아파트14동106호 김효석
7	임야	방립 방립리 산705	3,570	5,355	"	공설묘지 조성	방립 방립리 조규수
8	대	방립 계촌리 1486-6	557	16,710	"	계촌시가지정비 면입부지	방립 계촌 1338 정도연
9	"	" 1486-5	288	8,640	"	"	방립 계촌리 1466 이옥연
10	"	용평 용전리 135-24	207	12,523	"	용평 노인회관 부지	대화 대화리 1194-1 김성기 외 1인
11	"	" 135-25	233	14,096	"	"	흥천 내면 자운리 김명래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주소 소유자 성명
	지 목	소 재 지	수량				
12	대	용평 용전리 135-27	124	7,502	상반기	용평 노인회관 진입로 부지	봉명 농협
13	"	진부 하진부 147-20	269	67,250	"	보건지소 부지	진부 하진부리 148-41 강성만
14	"	도암 횡계리 321-7	30	24,000	"	횡계시 가지면입 부지	도암 횡계리 박재기
15	건물	명창 중부리	408.3	225,000	"	영농증합상황실 증축	명창군수
계	토지 건물 기타	14필지 1동	12,594 408.3	217,894 225,000			

94년도 교환대상 재산 목록 (7 - 3)

(일반회계)

단위 : m. 전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교 환 대상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유	교 환 대상자
	구 分	지 목	소재지	일 단의 수량					
1	교환취득	임야	대화 신리 산751	5, 950	5, 950	1, 487	상반기	군유립 집단화	대화 신리 종윤기
2	"	"	산756	2, 678	2, 678	696	"	"	"
3	"	하천	도암 횡계 661-14	53, 195	10, 522	119, 918	"	수해주택 이전부지	국 (재무부)
4	교환처분	임야	대화 신리 산 376	8, 132	8, 132	2, 521	"	군유립 집단화 처분	명장 군수
5	"	전	도암 횡계 279-9	2, 258	2, 258	42, 902	"	수해주택 부지 확보 처분	명장 군수
6	"	"	279-10	2, 314	2, 314	43, 966	"	"	"
7	"	"	279-11	3, 305	3, 305	62, 795	"	"	"
8	"	"	279-73	2, 645	2, 645	50, 255	"	"	"
계	교환취득	토지 건물 기타	3필지		19, 150	202, 101			
	교환처분	토지 건물 기타	5필지		18, 654	202, 439			

94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전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매각대상 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1	대	대화대화리 1001-114	218	139	36,279	상반기	지방재정법제 95조2항4호	대화대화9리 김덕철
2	"	1001-52	136	136	36,312	"	"	대화대화11리 김형기
3	"	" 72	102	102	27,234	"	"	"
4	"	봉명장동리 279-2	99	99	10,890	"	"	봉명농협
5	"	281-5	35	35	4,585	"	"	봉명장동4리 이재준
6	"	273-3	228	228	20,064	"	"	전재수
7	"	402-2	26	26	2,912	"	"	양근용
8	"	402-4	129	129	14,448	"	"	전재부
9	"	402-6	102	102	11,424	"	"	양근용
10	"	진부하진부 152-3	197	39	17,823	"	"	진부하진부 421 이세우
11	"	"	197	39	17,823	"	"	전형진
12	"	"	197	41	18,737	"	"	김영무
13	"	도암횡계리 331-13	171	171	57,114	"	"	도암횡계10리 전재구
14	"	325-57	151	149	54,087	"	"	도암횡계10리 전용우
15	"	366-71	246	117	3,744	"	"	도암횡계6리 황우열
16	"	"	246	114	3,648	"	"	명주시옥천동 148 최승자
17	"	"	246	15	480	"	"	도암횡계1리 김호경
계	토지 건물	13필지		1,681	337,604			

94년도 철거대상재산목록(7-4)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m², 전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철거대상 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철 거 사 유	매수희망자 주소 성명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1	건물	명장 중리 331-1	534.72	534.72	14,972	상반기	건물노후로 사용불가	명장군수
2	"	봉명장동리 294	419.94	419.94	11,758	"	"	"
3	"	봉명장동리 348-2	115.96	115.96	5,450	"	도시계획상 도로개설	"
계	토지 건물 기타	3동	1,070.62	1,070.62	32,180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 목록(7 - 7)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허가기간	무상대부 사용허가 근 거	비 고
	종별	소재지	지목 · 구조	수량			
1	토지	평창 하리 72-11	대지	99	92. 9. 1 ~ 95. 8. 31	법시행령 88조 제2항1호	평창군선거관리 위원회
2	"	" 72-15	"	204	"	"	"
3	"	용평장평리 380	임야	11,788	92. 9. 1 ~ 95. 8. 31	"	평창경찰서
4	"	평창 중리 330	대지	149	92. 6. 1 ~ 94. 5. 31	"	평창교육청
5	"	용평노동리 387-11	전	8,859	91. 7. 1 ~ 96. 6. 30	"	육군제3139부대
6	"	" 390	"	476	"	"	"
7	"	진부송정리 1306-16	잡	6,102	93. 4. 1 ~ 96. 3. 31	"	"
8	건물	도암병내리 산1	건물	68.98	91. 6. 1 ~ 96. 5. 31	"	오대산관리 사무소
9	"	평창 하리 210-2	"	51	92. 9. 1 ~ 95. 8. 31	"	새마을 바르게살기
10	"	"	"	43	93. 9. 1 ~ 96. 8. 31	"	평창군체육회
계	토 건 물 기 자 물 타	7필지 3동		27,677 162.98			

1994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평창군이 일반회계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제출한 1994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신규사업]

○ 일반회계

· 취득

(단위:㎡, 천원)

건 명	수 량	금 액	비 고
계	토지 14필/12,594 건물 1동/403.3	217,894 25,000	
① 현대화 시설용부지	1필 / 2,191	19,719	
②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	4필 / 4,834	29,004	
③ 군청진입로 부지	1필 / 291	13,095	
④ 공설묘지 조성	1필 / 3,570	5,355	
⑤ 계촌시가지 정비 편입부지	2필 / 845	25,350	
⑥ 용평노인회관 부지	3필 / 564	34,121	
⑦ 보건지소 부지	1필 / 269	67,250	
⑧ 횡계시가지 편입부지	1필 / 30	24,000	
⑨ 영농종합상황실	1동 / 403.3	255,000	

교 환

(단위: 원, 천 원)

건 명	수 량	금 액	비 고
○ 상호교환			
· 취득 (사유지)	3필 / 61,823 (2필/8,628)	122,101 (8,628)	
(국유지)	(1필/53,195)		
· 교환(군유지)	5필 / 18,654	202,439	

매 각

(단위: 원, 천 원)

건 명	수 량	금 액	비 고
① 건물점유 소규모재산 매각	17필 / 1,681	337,604	

월 거

(단위: 원, 천 원)

건 명	수 량	금 액	비 고
계	건물3동 / 1,070.62	32,180	
① 건물노후로 사용불가 (문화관)	2동 / 954.66	26,730	
② 도시계획도로 개설	1동 / 115.96	5,450	

· 무상대부

(단위: 평, 천원)

건 명	수 량	무상대부 사용허가 근거
계	토지7필 / 27,677 건물3동 / 162.98	
① 평창선거관리위원회	2필 / 303	법 시행령 88조 제2항 제1호
② 평창경찰서	1필 / 11,788	"
③ 평창교육청	1필 / 149	"
④ 육군제3139부대	3필 / 15,437	"
⑤ 오대산관리사무소	1동 / 68.98	"
⑥ 새마을, 바트게살기	1동 / 51	"
⑦ 평창군체육회	1동 / 43	"

'93. 12. 20.

第 20 回 定期會

← 1993年度行政事務監查 →

結 果 報 告 書

平 昌 郡 議 會

目 次

1. 監查實施概要

- 가. 監查의 目的
- 나. 監查期間
- 다. 監查實施機關
- 라. 監查班編成
- 마. 監查日程 및 場所
- 바. 監查實施對象事務

2. 主要監查實施

- 가. 所管別實施內容

3. 監查結果處理

- 가.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 나. 建議事項

4. 其他監查意見

1993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

1. 監查實施概要

가. 監查의 目的

地方自治法 第36條, 同法施行令 第17條 및 平昌郡議會 行政事務監查 및 調査에 關한 條例에 依한 行政事務監查를 實施하여 行政事務處理過程에서 나타난 問題點을 導出 分析하여

- 첫째, 그 結果를 '94 本豫算審議時 積極 反映하고,
- 둘째, 行政의 民主性, 能率性, 公正性 向上에 寄與함으로써,
 郡民 本位의 福祉行政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促求코자 함.

나. 監查期間 : '93. 12. 1 ~ 12. 3(3日間)

다. 監查實施機關 : 當然對象機關 (郡 本廳 및 所屬行政機關, 下部行政機關)

라. 監查班編成 : 行政事務監查特別委員會 委員全員

● 委員長 李相薰 ● 幹事 朴容泰

● 委員 李致玉, 朱泰元, 金樂雲, 郭文春, 金鍾永

* 事務補助 : 專門委員 辛教善 外4名 (議事係長, 職員, 記錄員 2)

叶. 監査日程 및 場所

日 程	對 象 機 關	場 所	備 考
'93. 12. 1(水) 10:00	企劃室, 文化公報室, 內務課, 社會振興課, 財務課, 社會課, 家庭福祉課.	郡廳 大會議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監査對象事務 聽取 · 質疑及 答辯
'93. 12. 2(木) 10:00	環境保護課, 產業課, 地域經濟課, 畜產課, 建設課, 都市課	"	"
'93. 12. 3(金) 10:00	山林課, 民防衛課, 保健醫療院, 農村指導所, 邑面(平昌邑, 芳林面 大和面)	"	"

叶. 監査實施對象事務 : 地方自治法 第9條에 明示된 事務

(固有事務 + 團體委任事務)

2. 主要監查實施內容

가. 所管別 實施內容

所管別	主要監查實施內容	備 考
平昌郡 (企劃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郡政 施策推進 旅費 支出內譯 ◦ 訴訟 事務處理 事項 ◦ 郡守包括事業費 執行內譯 ◦ 曾補助金 및 補償金, 執行內譯 ◦ 地方債 運用事項 	
(文化公報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有線放送 許可 및 指導監督 實態 ◦ 非指定觀光地 利用實態 및 管理事項 ◦ 文化財保存 管理 實態 ◦ 綜合 文化藝術會館建立 推進狀況 	
(內務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年度 1年以內 轉補者 現況 및 轉補事由 ◦ 바르게살기協議會 運營費補助金 執行內譯 ◦ 各種 監查時 指摘事項 處理狀況 ◦ 行政刷新 推進實態와 成果 ◦ 地方公務員 創案制度 運營事項 ◦ 郡民對象 審查方法 및 主要 공적내譯 ◦ '93 平昌獎學會 奬學金 支給現況 	

所管別	主要監查實施內容	備考
(社會振興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 ~ '93 마을안길 擴鋪裝事業推進狀況 ◦ 새마을支會 運營費 支援內譯 ◦ 蓬坪都邑整備事業의 遲延事由와 '94特別支援方案 ◦ 職場체육팀(씨름)現況 및 大會出戰內譯 ◦ 道民體典 및 生活體典 出戰經費 支援內譯 ◦ 이승복 青少年 修鍊場管理 實態 ◦ 白玉浦里 青少年 修鍊場 推進狀況 	
(財務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地方稅 및 稅外收入의 徵收 不振事由 ◦ 市場使用料 徵收 增額 方案 및 邑面別收入內譯 ◦ 各種工事 瑕疵發生에 對한 處理內譯 ◦ 國公有地 財產管理 内譯 ◦ 地方稅 徵收 不能에 對한 缺損處分 内譯 	
(社會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衛生接客業所 衛生檢查實態 및 行政處分事項 ◦ '92~'93年度 就勞事業 現況 ◦ 社會福祉 豫算執行 内譯 ◦ 生活保護 對象者 職業訓練內譯 	
(環境保護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村쓰레기장 不足對策 및 環境美化員 管理狀況 ◦ 畜產廢水 放流業體에 對한 指導監督 事項 ◦ 污水處理場 施設의 向後對策 ◦ 쓰레기 分離收去 推進 内譯 ◦ 河川水質污染 對策 	

所管別	主要監查實施內容	備 考
(家庭福祉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公設墓地 設置事業 推進內譯 ◦ 家庭福祉豫算 執行內譯 ◦ 幼兒給食 및 幼兒園 教師 人件費 支給內譯 	
(產業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93年度 農地 一時轉用內譯 ◦ 冷害被害農家 面積調查 内譯 ◦ 農機械 반값 供給 機種別 普及臺數,希望者對比 供給內譯 ◦ 青果物 流通센타 推進過程 ◦ 農村所得事業 및 特化事業推進, 各種支援事業 內譯 ◦ 農地不法轉用 團束現況 ◦ 마을공동 改良貯藏庫 支援內譯 	
(地域經濟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舟津農工團地 運營實態와 休.廢業內譯 ◦ 芳林硅石礦山 訴訟關聯 事項 ◦ 營業用 택시 車庫地 現況 및 運營狀態 ◦ L.P.G業所指導 監督 	
(畜產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實草地 管理 現況 및 對策 ◦ 家畜 豫防接種 内譯 ◦ 畜產專業農家 支援 内譯 ◦ 稚魚 放流後 生育狀態 調查內譯 ◦ 牛市場 運營 實態 	

所管別	主要監查實施內容	備考
(建設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除雪裝備 購入使用計劃 ◦ '92~'93 耕地整理事業內譯 ◦ 郡道에 設置된 橋梁 實態 ◦ 廢川敷地 賣却 内譯 ◦ 平昌排水펌프장 推進實績 및 成果 ◦ 금당계곡 郡立公園 指定告示等 推進事項 ◦ 郡道鋪裝實態 및 向後 推進計劃 	
(都市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珍富上水道 事業 推進 計劃 ◦ 地價動向 및 土地去來 狀況調查內譯 ◦ 松亭宅地 未分譲에 對한 對策 ◦ '93公示地價調整 异議 申請 内譯 ◦ 農村 住宅改良 支援內譯 ◦ 平昌上水道擴張工事 推進內譯 ◦ 大和 都市計劃 變更 및 지적고시 内譯 	
(山林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잎특파리 防除事業 内譯 ◦ 국제트랜스 山林復舊現況 ◦ 林道施設內譯 ◦ 芳林硅石礦山 山林毀損許可 經緯 ◦ 昙畠生產工場 稼動 事項 ◦ 山林契 運營 實態 ◦ 山地淨化 監視員運營 實態 	

所管別	主要監查實施內容	備考
(民防衛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邑面 消防車 運轉員 配置內譯 ○ 消防車輛及 裝備保有內譯 	
(保健醫療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93年度 受診患者 現況及 自體教育實施內譯 ○ 靈安室 推進計劃 ○ 保健支所 診療所 利用內譯 ○豫防接種 實施內譯 	
(農村指導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漁民後繼者 選定에 召集 審議資料 ○ 여름느타리 栽培 現況及 對策 ○ 農村所得事業及 特化事業推進等 各種支援事業內譯 ○ UR對備 經濟性 作目 開發 推進狀況 	
(邑 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就勞事業費 執行內譯 ○ 義勇消防隊 出動手當及 里·班長手當支給內譯 ○ 邑面長 包括事業費 執行內譯 ○ 市場使用料 徵收內譯 ○ 環境美化員 勤務現況 及 指導監督實態 ○ 各種經常費 支出內譯 	

3. 監查結果處理意見

가. 是正 및 處理要求事項

1. 郡守包括事業 選定은 單一 事業의 附帶施設等에 執行된것이 있어 改善이
要求됨
2. 各種事業의 附帶費 執行을 旅費로 支出하는데 따른 問題點을豫算部署에서
는合理的으로 調整하기 바람
3. 累積되는 地方債의 債還對策을樹立하여 計劃性있는 管理를 하기 바람
4. 公報新聞은 中央紙를 줄여서 地方紙를 늘리는 方案을 講究하고, 郵便配付時
受取人에게 設立되도록 對策을 講究하여 주기바람
5. 文化財 管理狀態를 再點檢하여 保存價值 與否를 判斷 必要한 措置를 講究
6. 公務員의 專門性 提高와 業務研讀을 生活化 할수 있도록 公務員 創案
(提案)制度를 活性化 시켜 나가기 바람.
7. 公務員이 人事不滿이나 職務怠慢이 發生치 않도록 苦衷相談 制度等을
活性化 시켜 人事管理에 徹底를 기하고 士氣振作에도 特殊의 對策을 講究바람.
8. 郡民大賞 収賞者 選定은 全郡民이 同感할 수 있는자로 深度있게 審議하고,
공적이 貧弱할 경우 除外하는등 신축성있게 運用하기 바람.

9. 行政刷新 推進은 當初보다 強度가 떨어지고 있어 諮問委員會 運營등 成果
를 높일수 있는 持續的인 推進 方案 講究.
10. 蓬坪 小都邑 整備는 當初計劃보다 推進이 遲延되고 있어 94年度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充分한豫算確保等 特殊의 對策을 講究바람.
11. 郡廳職場體育팀(씨름)은 地域實情에 맞는 種目으로 對替하는 方案講究
12. 市場使用料 收入이 극히 低調하고, 形式的으로 運營되고 있어 條例改正等
諸般對策을 講究 現實化하여 地方稅 收入 增大에 寄與하기 바람.
13. 地方稅 및 稅外收入 未收納分에 對한 特別徵收 對策을 講究推進바람
14. 衛生接客業所에 對한 定期衛生檢查는 協會에서 自律的으로 施行함으로
形式的인 檢查가 되고 있어 郡이 직접 施行하는등 必要한 對策이 要求됨
15. 邑面에서 施行하고 있는 就勞事業은 形式的인 事業이 되지 않도록 郡에서
철저한 指導·監督를 하기 바람.
16. 邑面의 環境美化員이 一部地域에 偏重되어 있어, 業務量을勘案한 定員
再調整 및 増員이 檢討되어야 함.
17. 道岩面 송천은 삼양축산, 한일농산등 企業 畜產廢水로 인하여 水質이
汚染되고 있어 이에 對한 積極的인 對策이 要求됨.

18. 農地一時轉用 許可時 法的 許可 條件이 되어도 民願의 소지가 있는 事案은 地域住民 意見收斂 및 關係部署間 協議로 深度 있는 檢討後 許可.
19. 家庭用 액화석유가스는 郡에서 告示한 價格을 班回報等 地域住民에게 弘報하고 一部 販賣業所에서 協定 價格外 追加徵收하는 事例가 없도록 철저한 指導. 團束이 要望됨.
20. 家畜防疫事業은 實質的인 防疫이 될수 있도록 物量을 대폭늘리는 方案을 講究 바람.
21. 草地는 草地補完事業 計劃에 依해 最大한 补完해 나가고 管理維持暨 機能이 상실된 草地는 山林으로 還元하거나 農地로 轉用해주는 對策 講究가 필요
22. 廢川敷地 賣却 實績이 全無하여 豐算運用에 瞜跌이 있었음, 94年에는 特別한 對策을 講究하여 推進하기 바람.
23. 70年代 高速道路邊 農家住宅이 現在까지 未登記 狀態로 財產權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民願이 야기되고 있음. 登記를 할수 있는 必要한 措置가 要望됨.
24. 松亭宅地는 早速한 時日內 分讓이 完了 될 수 있도록 特殊의 對策을 樹立推進하기 바람.
25. 林道施設은 地域與件과 充分한 住民意見을 收斂한後 施行하여야 하며, 長坪- 都事間 林道施設 瑕疵補修는 조속한 期間內 措置하기 바람.

26. 平昌邑 上里 골프연습장 山林毀損 원상복구가 現在까지 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조속히 對策을 講究하기 바람.
27. 1家庭 1消火器 갖기 實績이 극히 不振하여 火災 初動鎮火時 問題點으로
擡頭되고 있음.
全 家庭에서 消火器를 備置하도록 班常會等 啓導弘報와 손쉽게 구입할수
對策이 講究되어야 함.
28. 保健醫療院은 地域醫療機關으로서 운영에 開放을 갖추어가고있음.
公職者로서의 親切奉仕에 格別한 關心을 갖기 바람.
29. 農民後繼者 選拔에 많은 輿論이 擡頭되고있음. 向後 营農定着意慾이 강하고
後繼者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진 사람을 選定하는등 엄정한 選拔로 事前
民願을 解消하기 바람.
30. 里長手當은 매월 定期日에 支給하여야 하나, 邑面에서는 不規則하게 支給
하고 있어 改善이 要望됨.
31. 邑面開發委員會는 組織 및 運營이 條例로 規定되어 있으나, 그運營이 低調한
形式的인 團體로, 向後 繁榮會와 連繫하여 活性化 하는 方案을 講究 바람.

나. 建議事項

1. 各種社會團體에 對한 補償金 支援은 그團體의 自生力を 키워 官에 의지하지 않도록 支援을 줄여 나가기 바람.
2. 綜合文化藝術會館 建立은 열악한 地方財政을勘案하여 國·道費 支援이 많이 될수 있도록 對策을 講究推進바람.
3. 이효석 追慕事業은 鄉土文化 育成 次元에서 活性化하여 擴大하도록 對策을 講究.
- 가산공원, 효석백일장, 메밀꽃조성등
4. 크로스컨트리 專用競技場 造成工事로 因하여 山沙汰等隣近地域 住民에게被害가豫想되니 關係機關과 協議 事後對策을 講究바람.
5. 행여사망자 葬禮費는 1구당 10만원의豫算으로 策定되어 里長,指導者·班長이 住民으로부터 葬禮費를 각출하는등 住民에게 負擔을 주고 있어豫算策定시 實費補償對策이 要求됨.
6. 自動化 育苗場을 運營하는 委託營農會社에서 販賣하고 있는 育苗 生產供給價格은 住民에게 低廉한 價格으로 協定價格을 정하여 供給할 수 있는 對策이 要求됨.

7. 不法駐停車 團束要員은 一部 邑面에만 偏重되어 있으며 特히 蓬坪地域의 小都邑整備 市街地內 駐車秩序 解消量 為한 團束要員 配置가 要求됨.
8. 금당계곡의 군립공원 指定告示中 集團施設地區, 聚落地區, 自然環境地區, 自然保存地區中 集團施設地區를 擴大하여 민자유치 方案이 講究되어야 함.
9. 숲잎축파리 防除에 있어 高速道路周邊為主에서 금당계곡등 非指定觀光地 및 保護樹에 事業計劃에 包含 될수 있도록 措置바람.
10. 昙畝 生產示範事業은 山林資源의 效率的 利用과 零細 築林家의 所得向上에 寄與할수 있도록 持續的인 支援이 이루어 지도록 特別한 關心을 갖고 推進 바람.
11. 邑面의 消防業務에 圓滑을 기하기 為하여 消防車運轉員을 消防職으로 交替 또는 消防職 定員을 늘려 邑面에 配置하는 方案을 講究바람.

4. 其他 監查意見

가. 綜合 意見

□ 郡議會 開院以後 세번째로 實施한 行政事務監査는

- 郡民을 代表하는 郡政 監視機關으로서의 機能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고
 郡民本位의 福祉行政 推進을 誘導하는데 監査의 基本方向을 두고,
- 郡政의 監査對象事務 全般에 對한 資料와 情報를 事前에 最大한
 蒐集하였으며,
- 具體的인 監査에서도 郡民의 血稅가 住民便益 增進과 郡政發展을 圖謀
 하기 위해 適正하게 配分 執行되도록 豫算部分에 格別한 關心을 기울
 였고,
- 郡政의 業務가 住民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方向으로 遂行될수 있도록
 改善 方案을 導出하는데 全力하였음.

□ 그 結果

- 郡政施策의 企劃과 執行過程에서 施行錯誤를 最大한 줄이고 豫算의
 浪費를 막기위한 郡政 監視者로서의 任務를遂行하는 契機가 되었음.

나. 未洽한 部分

□ 行政事務監査量 為해

- 郡民의 代辯者 立場에서 郡政을 把握하고 情報量 收集하여 合理的이고 效率的으로 郡政이 推進될수 있도록 促求코자 하였으나,
- 多樣하고 專門化된 地方行政事務의 核心을 把握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 法的으로 制限된 監査期間동안 執行機關의 雄大한 事務量 全般의으로 監査하는데 多少 未洽하였음.

□ 監査方法에 있어서

- 包括的이고 雄大한 監査資料量 要求하고 充分한 檢討와 연찬없이 監査에 임하므로써 核心을 把握치 못한 추궁과 증복된 質疑등은 改善이 要求되었음.

□ 監査受監 機關에서도

- 지난해에 比해 監査要求資料 및 業務報告書 作成等에 充實을 기하기 위해 努力한 흔적이 있으나,
- 委員들의 質疑에 대하여 儀禮的이거나 慣例的이고, 순간 謙免的인 答辯이 大部分이었으며,
- 具體的인 代案提示와 發展的인 方向을 模索하는데는 未洽하였음.

다. 今後 改善方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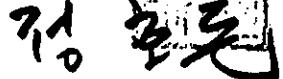
이번 監查에서 나타난 問題點을 綿密히 檢討 分析하여 關聯規定의 改正等이
必要한 部分은 이를 積極反映하여야 하겠으며,

□ 執行機關에서도

- 監查過程에서 委員들의 是正要求나, 建議事項에 對하여는 充分히
研究檢討하여 行政遂行時 積極 反映될수 있도록 措置하고,
- 特히 地方化 時代를 맞아 行政의 多樣化와 專門化 趨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도록 公職者들의 不斷한 自己革新을 通하여 ,
- 郡民이 바라는 福祉行政이 遂行될수 있도록 倍前의 努力を 기울려
나가야 하겠음.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9
----------	-----

제출년월일 : 1993. 10. 25.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공유임야에 관한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현행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임야 지산 휘급에 관한 준용규정인 산림법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고 있으나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5항의 공유임야 대부요율이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의 국유임야 대부요율과 같고,
- 등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이 다양한 경우의 각기 다른 요율적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적용의 신축성을 기하고자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5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현행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5항} 규정상 고정요율인 "1,000분의 10"을 삭제하고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국유임야 대부요율을 준용도록 함으로써 요율체계를 다양화 함. (100분의 1, 100분의 5, 100분의 10등)

명장군조례 제 호

평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증개정조례안

명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4. 1. 1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p> <p>① - ④ (생략)</p> <p><u>⑤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품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u></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품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하기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본조에 따른 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u></p>

관 계 법 규

○ 산림법

第75條 (國有林의 貨付 등) ① 山林廳長은 다음 각號의 1의 경우에 한하여 國有林을 貨付 또는 使用許可하거나 國有財產法 第6條의 管理廳에 대하여 國有林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1. 公用 · 公共用 또는 公益事業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牧畜 · 造林 또는 鑽業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山林契 · 山林組合 또는 山林組合中央會가 造林을 위하여 필요할 때
4. 產業施設을 위하여 필요할 때
5. 國有林產物을 買受者가 그 產物을 採取 · 加工 또는 運搬하는 施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6. 山林組合 또는 山林組合中央會가 그 事業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할 때
7. 學校設立認可를 받은 者가 學校用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8. 休憩林 · 樹木園 또는 鳥獸保護 및 獵獵에 관한法律 第13條의 獵獵場의 施設을 위하여 필요할 때
9. 青少年育成法 第2條第2號의 青少年施設을 위하여 필요할 때

○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 ① 산림청장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연간대부료는 당해 임야의 임야가격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90·7·14, 90·12·31, 92·2·22, 92·12·31>

1. 목축 · 조림용, 휴양림 · 수목원 · 수렵장시설 및 법 제75조제1항제4호의 산업시설중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업시설의 경우 : 100분의 1
2. 공용 · 공공용 · 공익사업용 · 청소년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100분의 5. 다만,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할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임야가격(대부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최종인도의 임야가격을 말한다)의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한다.
3. 기타 목적의 경우 : 100분의 10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⑤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94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154
----------	-----

제안년월일 : 1993. 12.

제안자 : 평창군



경상북도

1. 제안사유

관내 유일한 미 급수지역이며 날로 오염되어가고 있는 식수원 보호와 위생적인 양질의 급수를 공급하고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하기 위한 계촌상수도신설사업에 소요될부족 재원을 보충하므로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내실을기하고자 지방채발행을 등의요구함

2. 주요골자

■ 지방채 차입 계획

< 특별회계 >

◦ 사업명 : 계촌상수도신설

◦ 기채규모 : 삼억오천만원(₩350,000,000)

◦ 기채선 [건설부로록 : 200,000,000원
[강원도지역개발기금 : 150,000,000원

◦ 기채종류 : 중서차입

◦ 발행시기 : '94. 5.

◦ 이율 [토록 : 5%
[지역개발기금 : 7%

◦ 상환기간 [토록 : 5년거치15년균분상환
[지역개발기금 : 2년거치12년균분상환

◦ 상환재원 : 군비

桂村上水道新設事業

□ 事業推進 目的 及 必要性

- 管内唯一한 未給水面이며 上水道普及으로 保健衛生 寄與

□ 事業概要

- 位 置 : 平昌郡 芳林面 桂村里
- 事 業 量 : $Q = 600\text{톤}/\text{일}$
- 事 業 費 : 480百萬원
- 事 業 期 間 : 1994年

□ 事業推進 及 今後計画

○ '94 推進計画

- 設計用役 : '94. 4月까지
- 着工豫定 : '94. 5月
- 竣工豫定 : '94. 12月

- 地方債償還財源 : 郡費

□ 年度別 投資 及 財源 調達 計画

(單位:百萬원)

財源 別	計		既投資		'94投資		'95以後		備考
	事業量	事業費	事業量	事業費	事業量	事業費	事業量	事業費	
財源									
郡費 地方債	Q=600 T/D	130 350			Q=600 T/D	130 350			土特 200 地域開 發基金 150

□ 事業效果

- 上水道普及率増大至農村地域住居環境改善
- 住民保健衛生寄與

□ 年度別工種別推進計劃

財源別	計		既投資		'94投資		'95以後		備考
	事業量	事業費	事業量	事業費	事業量	事業費	事業量	事業費	
工種別		480				480			
工事費	600T/D	400			600T/D	400			
補償費	1500ml	60			1500ml	60			
其他	用役	20			用役	20			

1993년도 평창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151
------	-----

제출년월일 : 1993. 12.

제출자 : 평창군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합니다.

2. 제안주요내용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요구액은 총 $1,349$ 백만원으로 일반회계 $\Delta 705$ 백만원과 특별회계 $\Delta 644$ 백만원이며

(세 입)

일반회계는 지방세 $\Delta 225$ 백만원, 세외수입 $\Delta 1,000$ 백만원, 보조금 297 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사업외수입 $\Delta 644$ 백만원입니다.

(세 출)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Delta 225$ 백만원, 관서운영비 $\Delta 10$ 백만원, 기본경상비 $\Delta 52$ 백만원, 경상사업비 $\Delta 103$ 백만원, 주요사업비 $\Delta 41$ 백만원, 기타 $\Delta 556$ 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본경상비 $\Delta 14$ 백만원, 주요사업비 $\Delta 630$ 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 재무부담행위설명서
4. 명시이월비설명서
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 재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지방재정계획서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3) 지방자치법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년도시 4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35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1993년도(3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예 산 종 칙

1993년도 [3회 추경]

- * 제1조 :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채권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 원)

회 계 별	세 입 세 출 예 산 총 액	입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57,995,704	1,739,871
일 반 회 계	47,538,987	1,426,169
특 별 회 계	10,456,717	313,70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64,285	76,928
주택사업특별회계	826,029	24,78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40,673	16,220
세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10,175	305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7,400	2,022
세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107,443	3,223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483,009	14,490
공유임야관리사업특별회계	75,550	2,266
지방양여금관리사업특별회계	5,782,153	173,464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1993년도 재무부 담행위는 별첨 '재무부 담행위 조서'와 같다.
 - 제4조 : 1993년도 자방지 발행 한도액은 2,300 백만원으로 한다.
 - 제5조 : 199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제6조 : 1993년도 기속비 사업은 별첨 '기속비조서'와 같다.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261,762천 원으로 한다.

심사보고서

1993年 12月 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12월 14일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1993년 12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20회 평창군의회(정기회)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3.12.14) 상정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3.12.20)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고창식)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억500만원이 감소된 475억3,900만원

○ 특별회계는

6억4,400만원이 감소된 104억5,700만원임.

- 일반회계는 세입재원별 내역

- . 지방세가 200만원 감액
- . 세외수입 10억원 감액
- .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2억8,200만원
- .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1,500만원

- 세출예산은

- .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93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4억3,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 . 인건비 2억2,500만원, 판서운영비 1,000만원 기본경상비 5,200만원, 경상사업비 1억300만원 주요사업비 2억4,100만원, 기타 5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

- 특별회계는

- . 세입은 일반회계 6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기본경상비 1,400만원, 주요사업비가 6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 신교선)

- 가.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군정사업을 마무리 하는 최종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세입면에 있어서는 93년 결산을 대비하여 결합요인을 사전조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볼수 있으며,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세입조치 하였음.
- 세출면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등, 기정예산을 절감하여 국도비 보조부담 및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하면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는 계상하고 잔액은 예비비에 계상하는등 결산을 대비하는 예산임.

-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13억4,800만원이 감된 예산(2%)으로,
일반회계는 7억400만원(2%)이 특별회계는 6억4,400만원이
감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입분야

-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금 200만원, 세외수입은 송정택지분양 지원으로
10억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2억9,700만원이 증액됨.

다. 세출분야

-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가 감소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기본적경비 2%, 기타경비에서 17%가 감소되었고,
사업비는 1%가 증가되었음.

라. 특별회계 세입분야

- 기정예산 대비 6%가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4,4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운영지원비가 감된 사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전환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을 내년도로 연기함으로 감 편성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노임취로사업비가 감된 사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비 증액내시와 사업축소로 감소 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자녀학비보조금이 감액된 사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개량제 공급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획보다 신청량 감소로 인하여 감소 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대상 제 시상금이 삭감된 사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책 자체가 취소됨으로 삭감 되었음.

5. 토론요지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가. 소위원회 위원 : 박문춘, 이치옥, 주태원위원 (3명)

나. 심사결과 보고 : 박문춘 위원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12월 18일 계수조정소위원회

나. 수 정 이 유 : 경상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

다. 수정 주요골자

-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 . 의회비 경상사업비 200만원 삭감
- . 내무행정비 시군행정운영 1,000만원 삭감
- . 예비비 1,200만원 증액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첨부 : 199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1부.

1993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1. 예산총칙

- 제1조 : 변동사항 없음.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총 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비 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57,995,704	1,739,871	

- 제2조 ~ 6조 : 변동사항 없음.

2. 예산수정내역

○ 회계구분 및 세입세출별 —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지방자치 단체제출	수정		수정 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관	항	세항		감액	증액		
1000							예산절감
의회비			329,643	2,000		327,643	
	1200		329,643	2,000		327,643	
		1210	329,643	2,000		327,643	
2000							예산절감
일반행정비			10,415,530	10,000		10,405,530	
	2200		7,561,005	10,000		7,551,005	
		2230	488,224	10,000		478,224	
8000							증
지원 및 기타경비			623,272		12,000	635,272	
	8500		261,762		12,000	273,762	
		8511	261,762		12,000	273,762	

'94일 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	
번호	143

제출년월일 : 1993. 11.

제출자 : 평창군



경기도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견 요구합니다.

2. 제안주요내용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견 요구액은 총 38,91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5,871백만원과 특별회계 3,039백만원이며

【 세 입 】

일반회계는 지방세 5,751백만원, 세외수입 4,468백만원, 특별교부세 17,561백만원, 보조금 8,091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083백만원, 보조금 606백만원, 지방채 350백만원입니다.

【 세 출 】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9,792백만원, 물건비 6,005, 이전경비 4,696백만원, 자본지출 14,295백만원, 보전재원 393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475, 예비비 21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인건비 11백만원, 물건비 692백만원, 이전경비 776백만원, 자본지출 945백만원, 용자및 출자 244백만원, 보전재원 362백만원, 기타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 재무부담행위설명서
4. 명시이월비설명서
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 재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지방재정계획서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3) 지방자치법

-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도는 회계년도시 40일전까지 시. 군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35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예산안을 시. 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시. 군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199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평창군

[예] 산 충 츠

1994년도 [본예산]

(단위 : 천원)

* 제1조 :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임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회 계 별	세 입 세 출 예 산 총 액	임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38,910,363	1,167,310
일 반 회 계	35,871,405	1,076,142
특 별 회 계	3,038,958	91,16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23,676	39,710
주택사업특별회계	871,883	26,156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51,810	16,554
세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	201,068	6,032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3,634	1,308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46,887	1,406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4조 : 199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50** 천만원으로 한다.

* 제6조 : 1994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첨 '개속비조서'와 같다.

* 제3조 : 1994년도 재무부 담행위는 별첨 '재무부 담행위 조서'와 같다.

* 제5조 : 199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215,591** 천원으로 한다.

1994일 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외안 번호	150
----------	-----

제출년월일 : 1993. 12.

제출자 : 평창군

710 2 3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도일 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의결요구하였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2. 제안주요내용

1994년도일 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 8,520 백만원으로 일반회계 8,520 백만원이며

(세입)

일반회계는 지방세 △4 백만원, 세외수입 △46 백만원, 지방교부세 2,077 백만원, 지방양여금 2,989 백만원, 보조금 3,072 백만원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9 백만원, 물건비 95 백만원, 이전경비 399 백만원, 자본지출 1,808 백만원, 보전재원 0 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0 백만원, 예비비 227 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 재무부담행위설명서
4. 명시이월비설명서
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지방재정계획서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3) 지방자치법

-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시 4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35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1994년도(수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예 산 증 칙

1994년도 [1회추경]

* 제1조 :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죄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 원)

회 계 별	세 입 세 출 예 산 총 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47,431,065	1,422,931
일 반 회 계	44,392,107	1,331,763
특 별 회 계	3,038,958	91,16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23,676	39,710
주택사업특별회계	871,883	26,156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51,810	16,554
세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	201,068	6,032
영세민생환경기금특별회계	43,634	1,309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46,887	1,406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1994년도 재무부담행위는 별첨 '재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 제4조 : 1994년도 지방세 발행 한도액은 350 퍼센트로 한다.

* 제5조 : 1984년도 면시이위사업은 별첨 '면시이위사업' 조서의 각다

* 제6조 : 1994년도 기술비 사업은 별첨 '기술비조성'와 같다.

* 제7종 : 의약회계 예비비는 444,300 원으로 한다.

199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보고서

1993年 12月 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당초 : 1993년 11월 26일 평창군수
- 수정 : 1993년 12월 14일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당초 : 1993년 12월 8일
- 수정 : 1993년 12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0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 12월 8일 상정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3년 12월 20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고창식)

- 예산편성의 주요내역은

- . 예산의 총규모는 47억3,100만원으로 '93년도에 비하여 8%가 감소 되었으며,
- . 이중 일반회계는 443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가 증가 하였음.

- 세입예산의 내역은

- . 지방세는 57억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 .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49억1,500만원과 특별회계 20억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 . 지방교부세는 195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 . 지방양여금 29억8,900만원
- .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117억6,900만원으로 93당초 예산보다 40억3,800만원이 증액 되었음.

- 세출예산은

- . 인건비등 기본적경비 224억5,200만원
- . 사업비 240억4,600만원임.
- . 지방채상환 기타경비 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신교선)

가. 199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43억9,200만원,

특별회계 30억3,900만원을 포함, 총 474억3,1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4억5,500만원을 공제하면 순계 총규모는 469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가 감소(일반회계 2%, 특별회계 28%)되었으며,

○ 예산 신장을이 감소한것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중 송정지구택지매각 77억원과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추진 일반회계 전입금 4억2,4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5,300만원이 감소된데 주요인이 있으며,

○ 자주재원율은 '93년 40%에서 27%로, 13%가 감소 되었음.

나. 일반회계

- 세입부분

- . 세입은 총 443억9,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가 증가되었으며, 전년도에 대비하여 장별로 분석하면 지방세가 57억4,700만원으로 18%가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4%가 감소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1% 보조금은 44%가 증가 되었음.
- . 지방세는 전년대비 10% 증가 되었으며, 주민세활 및 법인세활 증가, 건물과표와 신축건물 증가 차량증가 종합토지세 과표인상으로 기인되며 담배소비세는 소비량 감소로 감소.
- . 세외수입 감소 주요원인은 송정택지분양 수익금이 분양지연으로 편성 제외 됨으로서 감소.
- . 국고보조금은 58% 도비보조금은 33%가 증가.

- 세출부분

- . 경제성질별 예산의 기본적경비(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209억 7,700만원으로 47%를 점유하고 있음.
- . 사업비는 229억7,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2%이며, 전년 당초 예산대비 2% 증가 되었고, 기타경비는 4억4,300만원으로 2%가 증가.

다. 특별회계

- '94 예산 편성지침의 특별회계 운영 방향에 따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폐지되고 일반회계에 편성되며,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새마을금고 운영 관리 특별회계로 통폐합.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택보호대상자가 줄어든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향상과 보호대상자 사망, 타지역 전출로 인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시설 지원계획이 줄어든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축소는 사실임, 단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농가를 선정 추진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늘어난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내 전체 공장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 증가 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촌상수도 시설을 지방채 차입을 하면서 시행하는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급수지역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해 줄 의무가 있음.

5. 토론요지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가. 소위원회 위원 : 꽈문춘, 이치우, 주태원

나. 심사결과 보고 : 꽈문춘 의원

다. 주 요 요 지 : 불요불급한 예산 2억2,360만원 절감으로 지역현안
사업 해결에 투자.

7. 수정안의 요지

-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 군정수행유공민간인보상 2,500만원 감
- 군정수행유공민간단체보조 2,500만원 감
- 군민현장비 건립 3,000만원 감
- 일간지 군정홍보게제 1,100만원 감
- 통신관리 8,000만원 감
- 산불유급감시원 이건비 2,700만원 감
- 직장체육부운영 2,500만원 감
- 지역개발비 지역현안사업해결 2억2,360만원 증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첨부 : 1994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안 1부.

199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안

1. 예산총칙

- 제1조 : 변동사항 없음.

(단위 : 천원)

회계명	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비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47,431,065	1,422,931	

- 제2조 ~ 6조 : 변동사항 없음.

2. 예산수정내역

○ 회계구분 및 세입세출별 —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지방자치 단체제출	수정		수정 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관	항	세항		감액	증액		
2000							
일반행정비			15,234,141	171,000		15,063,141	
2100							
기획관리비			9,167,029	50,000		9,117,029	
	2120						
	기획관리		648,282	50,000		598,282	
		2123					
		예산운영	531,461	50,000		481,461	예산절감
2200							
공보비			168,420	41,000		127,420	
	2210						
	공보관리		168,420	41,000		127,420	
		2211					
		공보관리	163,816	41,000		122,816	예산절감
2300							
내무행정비			5,062,206	80,000		4,982,206	
	2310						
	내무행정		4,405,261	80,000		4,325,261	
		2311					
		사무관리	2,251,040	80,000		2,171,040	예산절감
4000							
산업경제비			12,563,162	27,000		12,536,162	
4200							
임업비			2,351,326	27,000		2,324,326	
	4210						
	산림관리		1,238,251	27,000		1,211,251	
		4211					
		산림관리	1,238,251	27,000		1,211,251	예산절감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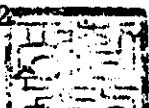
예산과목			지방자치	수정		수정	수정사유
관	항	세항		단체제출	감액	증액	예산액 및 내역
6000	문화 및 체육비		1,280,675	25,600		1,255,075	
	6210	체육비	487,410	25,600		461,810	예산절감
		6211 체육진흥	487,410	25,600		461,810	
	5000	지역개발비	9,068,165		223,600	9,291,765	
	5220	지역개발	1,799,872		223,600	2,023,472	증
		5222 지역개발	1,799,872		223,600	2,023,472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2
----------	-----

제출년월일 : 1993. 12.

제출자 : 평창군



정우호

1. 제안이유

- 현행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수수료의 감면동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에 비군 중·소대장 및 면·리대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88년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시군자치법규 정비준칙에 의한 조례개정시 확으로 리·반장이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었던 바 삽입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제증명등수수료의 감면대상에 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경우도 포함. (등조례 제7조제2항)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기정조례안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면·리대장이" 를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과 읍·면·리대장 및 리·반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령 발췌 서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제2항

-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및 면·리대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명창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44
----------	-----

제출년월일: 1993. 11.

제출자: 평창군

910 2000

1. 제안이유

보건지소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사회부훈령제666호에 의거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보건사회부훈령제666호)이 1993. 3.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함.

평창군조례 제 호

명장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발췌서

1.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 1993. 3. 1)

—별첨—

2. 보건소법 제4조 (보건지소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3. 보건소법시행령 제7조(지소장)

- ①보건지소에 지소장 1인을 두되, 지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임명한다.
- ②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관내 보건진료원의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국 회 사 무 처

우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전화(02) 788-2154

문서번호 의안제 5381호

시행일자 1993. 11. 29.

수신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
평창군의회

제목 건의서 송부통지

1993. 11. 29. 귀 의회에서 제출한 "농업재해대책현실화에관한건의서"는
농림수산위원회에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끝.

국 회 사 무 총



“너와 나의 통신보안 국가기밀 보호한다.”

농 립 수 산 부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전화(02)503-7251 / 전송(02)503-7249

문서번호 농산 51195-811

시행일자 1993.12.03

수신 받는곳참조

선 결			지 시	
	접	일자 시간		결
수 번호			재 · 공	
	처 리 과			
담 당 자			람	

제목 농작물 피해농가 복구지원 건의에 대한 회신

1. 귀의회에서 우리부(민자당)에 건의하신 농작물 피해농가 복구지원 개선책에 관하여 검토 회신함.

2. 정부에서는 '80년도 냉해로 인한 흉작의 결과를 거울삼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93. 8월초부터 60억원의 도열병 방제비 지원과 긴급방제령 발동 및 관계 공무원 비상근무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산간지역 일부지역에서 심한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지원은 피해농가의 차기 영농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상차원이 아닌 구호차원에서 1㏊미만 영세농가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4. 금년 냉해가 발이 많은 산간지역의 벼에 심하고, 현행기준으로는 많은 농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영세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하여 현행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과 함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피해가 우심한 농가에 대하여는 무상양곡, 생계비등을 특별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농가에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피해 30%이상 농가
 - 232천호 (전체 피해농가의 66%)
- 총 지원규모 : 1,796억원

- 현행기준 : 706억 원

- 특별지원 : 1,090억 원

○ '93 냉해지원대책 : 덧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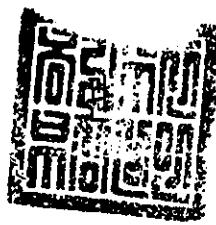
5. 그리고 간접지원 기준을 농가별 피해면적 기준으로 하지말고, 필지별(또는 작물별) 피해면적 기준으로 개정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영농자금 상환연기, 수업료면제, 이재민구호, 무상암곡등 현행 간접지원 내용의 성격상 필지별 피해율에 따라 지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구호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 법 정신에 의거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지원하는 것입니다.

6. 한편 장기적으로는 일본, 미국등과 같이 보험이나 공제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향후 보험수요가 예상되는 과수, 시설원예, 축산등 성장작목을 대상으로 농가희망, 보험실시 가능성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덧붙임 : '93 냉해지원대책 1부. 끝.

농림수산부
장

농 산 과 장 전 결



받는곳 : 문경군 의회의장, 평창군 의회의장, 양구군 의회의장, 무주군 의회의장,
남원군 의회의장, 전북 동남지역의회의장단 협의회장, 화순군 의회의장.

’93 冷 害 支 援 對 策

1993. 12

農 林 水 產 部

1. 被害狀況

- 全國의 冷害被害 狀況을 調査한 結果, 總 234千ha에 339千 農家가 被害를 입었으며,
作物別로는 벼가 208천ha, 밭作物이 26千ha임.
- 支援對象은 30%이상 被害를 입은 232千 農家임.

〈冷害被害面積〉

(단위 : 천ha)

도	계	30% 미만	30-50% 미만	50-80% 미만	80% 이상
	234 천ha	42	58	91	43
경기	6	2	2	2	-
강원	35	4	6	15	10
충북	6	1	2	2	1
충남	7	2	2	2	1
전북	10	2	2	4	2
전남	23	3	6	9	5
경북	90	17	24	34	15
경남	57	11	14	23	9

-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인근 도에 포함.

* 최근의 우박피해 9千ha는 피해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원액에는 포함됨.

2. 支援 對策

□ 基本 方針

- 現行『災害救護 및 復舊費用 負擔基準』改正을 關係部處와 협의하였으나,
颱風등 既 발생된 災害로 支援받은 農漁家와 타 부문과의 형평문제등을 감안
現行 支援基準에 의거 支援하되, 特別支援 並行推進

□ 支援 對策

- 支援對象 : 피해 30%이상 농가

- 232천호 (전체 피해농가의 66%)

- 總 支援規模 : 1,796억 원

- 현행기준 : 706억 원

- 특별지원 : 1,090억 원

- 支援內容 :

- 무상양곡지원 (호당 3~10가마) : 1,006억 원

-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369억 원

- 생계비지원 (호당 20~40만원) : 305억 원

- 이재민구호비 : 77억 원

- 중고생 수업료 면제 : 39억 원

- 기타 : 농지세, 농조비감면, 중·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支 援 細 部 內 譯

구 분	내 용	소요액
총 소요액		1,796억원
○ 현행지원기준		706억원
- 무상 양곡	. 1.0ha 미만 50-80% 피해농가 (5가마) □ . 1.0ha " 80%이상 " (10 ")	(389)
-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 50%이상 피해농가	(201)
- 수업료 면제	. 1.0ha 미만 50%이상 피해농가	(39)
- 이재민 구호	. 1.0ha 미만 80%이상 피해농가	(77)
○ 특별지원		1,090억원
- 무상 양곡	. 규모에 관계없이 30-50% 피해농가 (3 가마) . 1.0ha 이상 50-80% " (5 ") . " 80%이상 " (10 ")	266 (160) (84) (22)
- 영농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 30-50% 피해농가	168
- 일반미로 전환		351
- 생계비	. 1.5ha 미만 50-80% 피해농가 (200천원) . " 80%이상 " (400 ")	305 (219) (86)
- 학자금 대여지원 등	. 1.0ha 미만 30%이상 피해농가 . 1.0-1.5ha " 50% " . 1.5-3.0ha " 80% "	미정

※ 양곡대는 '91년산 일반미 기준 (92,000원/80kg)

※ 특별지원 학자금 대여는 신청을 받아 응자지원하고 이자보전은 사후정산

냉해 피해 농가 호당 지원액

피해율	1㏊ 미만	1~1.5㏊	1.5㏊ 이상
30~50% 미만	소계 471천원 - 쌀 3가마 276 - 영농자금 195	471천원 3가마 276 195	471천원 3가마 276 195
50~80% 미만	소계 889 - 쌀 5가마 460 - 영농자금 195 - 학자금 34 - 특별지원 200	855 5가마 460 195 - 200	655 5가마 460 195 - -
80% 이상	소계 1,955 - 쌀 10가마 920 - 영농자금 195 - 학자금 34 - 이재민구호 406 - 특별지원 400	1,515 10가마 920 195 - - 400	1,115 10가마 920 195 - - -

※ 30%이상 피해농가 평균 지원액 : 775천원

국 회 사 무 처

우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전화(02) 788-2154

문서번호 의안제 5719 호

시행일자 1993. 12. 17.

수신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평창군의회

제목 건의서 송부통지

1993. 12. 10. 귀 의회에서 제출한 "추곡수매에 관한건의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에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끝.

국 회 사 무 총

